

새 정부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일시 : 2017. 6. 29(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자치부



Leadership
Hanrimwon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1. 프로그램(식순).....	최 옥 주(본 연구회 부회장)	
2. 기조 발제 및 좌장 :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1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발 표 1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복지체감도와 현실성		13
-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2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43
-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3 :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복지재원 조달방안		61
-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3. 부 록 : 본 연구회 연혁 / 언론기사 / 소개 / 공지사항		89

프로그램

1부

사회 : 최 옥 주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인 사 말 성 규 탁 이사장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김 진 학 회장 한국사회복지포럼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부

기조 발제 및 좌장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발 표 1 -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2 -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3 - 김 재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2) 참관자 질의/응답

3) 총 마무리 발언 : 발표자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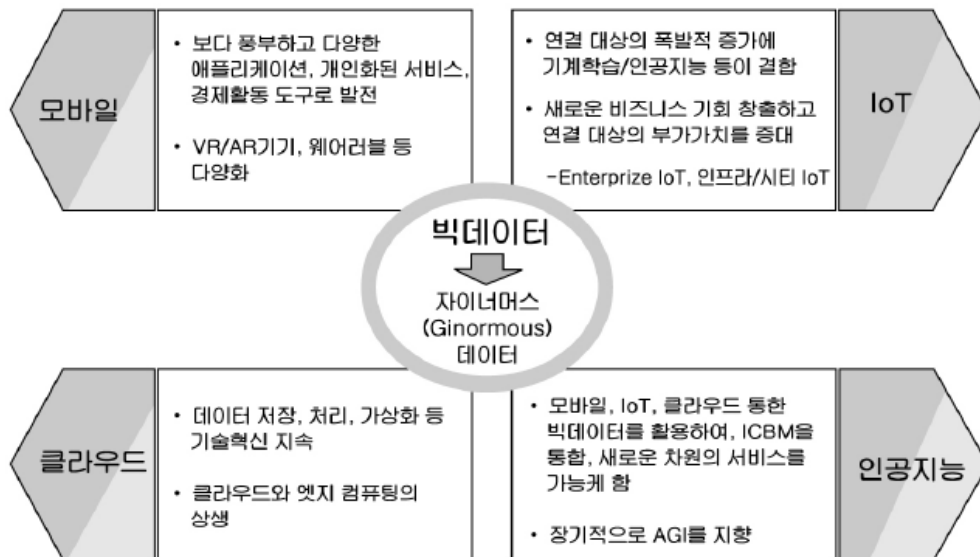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 한국의 고령화 장기침체

우리나라는 2000년대이후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2005년에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왔지만 노인 빈곤률은 OECD 평균의 5배에 이른다. 특히 80세 가까운 고령자의 자살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우리사회의 가족공동체 전통이 무너지고 복지정책의 전달체계가 섬세하지 못한 현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출산률이 2016년 현재 1.17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가속화 되어가면서 인구절벽에 다다르고 있는 현상이다. 그 결과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소비가 감소하여 국민소득 성장절벽의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ICBM(IoT/Cloud/Bigdata/Mobile) + AI



최계명, “4차 산업혁명과 IC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02

【표 2】 인구규모와 인구성장

(단위 : 천명, %, 인구 100명당 명)

	총인구	인구 성장률	중위 연령	인구 구성비			노령화 지수 ¹⁾	노년 부양비 ²⁾
				0~14세	15~64 세	65세 이상		
1990	42,869	0.99	27.0	25.6	69.3	5.1	20.0	7.4
1995	45,093	1.01	29.3	23.4	70.7	5.9	25.2	8.3
2000	47,008	0.84	31.8	21.1	71.7	7.2	34.3	10.1
2005	48,185	0.21	34.8	19.1	71.9	9.0	46.8	12.5
2010	49,554	0.50	37.9	16.1	73.1	10.8	67.2	14.8
2016	51,246	0.45	41.5	13.4	73.4	13.2	98.6	18.0
2020	51,974	0.31	43.6	12.6	71.7	15.6	123.7	21.8
2030	52,941	0.07	48.8	11.5	64.0	24.5	212.1	38.2
2040	52,198	-0.32	53.0	10.8	56.4	32.8	303.2	58.2
2050	49,433	-0.72	56.4	9.5	52.4	38.1	399.0	72.6
2060	45,246	-0.97	58.9	9.4	49.6	41.0	434.6	82.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12.

주 : 1)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고령인력 참여복지

1) 고령소외(Older Exclusion, ICT소외)

-고령소외는 1차적으로 고령화에 의한 신체적 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일자리상실과 빈곤, 사회적소외가 일반적 현상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의한 ICT정보의 소외는 생존의 의미를 상실하는 심각한 정서적 타격을 받게 된다.

-노인 실업-빈곤-자살이 ICT소외에 의한 사회적 귀속감의 결여

- ① 고령소외: 1차(건강기능)⇨ 2차(고용배제)⇨ 3차(사회소외)⇨ 4차(ICT 소외)
- ② 고령배제와 침체: 고령소외-취업상실-노인빈곤-정서소외-자살증가-소비감소-경제침체
- ③ 고령스마트화: 정보교육 공개방송, 청년ICT봉사단, 노인상담-재교육, 고령협업(고령창업+청년일자리), 노인성취감(자살방지, 성취정서), 고령재교육(재가)
- ④ 고령성장동력: 고령인력 스마트화(ICT교육, 청년협업), 전달효율(공공-민간 협치), 수혜통합(소-중-대분류 프로그램), 최적배분(효율생산성), 통합연계(융합, 협치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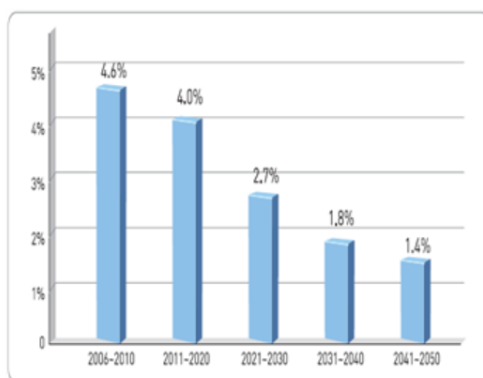
-고령배제(Older Exclusion): 고령사회의 성장절벽의 해결은 초 고령사회의 생존필수이다.

고령자의 정보소외에 의한 취업기회 상실은 노인빈곤과 소외감에 의한 자살 증가와 다수고령자의 빈곤화는 소비감소, 기능저하에 의한 성장잠재력 감소로 국민소득감소로 이어져서 경제의 장기침체를 초래한다.

2) 고령스마트화(Smart senior)와 성장동력화

- 고령자의 정보소외(Digital Divide)해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해서 방송에 의한 정보교육의 쉬운 안내, 애플리케이션의 공공보급, 지역행정기관의 정보교육, 학생봉사단의 진학인증, 군인의 정보교육봉사, 주부정보봉사단. 등에 의한 고령자의 ICT교육은 잠재생산성 높이게 됨.
- 고령성장동력화(Progrowth Activation): 고용의 정년제한 철폐를 선행하고 고령의 창업과 청년의 ICT 협업에 의한 창업교육, 시장지원, 지속개발 연계,

[그림 3]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KDI

[그림 4] 부양률 변화 추이(1970~205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감사원)

인구의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포괄적 사업에는 비중이 약함.

1) 5대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점검(감사원)

2013년도 감사원에서 노인복정책의 주요 점검 사항은 노인복지시책(치매), 노인보건의료(치료, 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노인일자리아업(선정,

관리), 노인복지시설(분포, 안전기준, 보조금 적정) 등 이었다.

- 2) 노인일자리 부족, 노인의료비 증가 요인점점, 노동의 질과 양 저하, 성장잠재력 감소(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 소비감소, 내수위축), 특히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 (1955 - 1963): 은퇴충격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

3) 노인장기요양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2가지로 구분: 시설급여-재가급여>

① 시설급여: 시설 인력 지원

② 요양급여: 재가급여(방문, 목욕, 간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용구제공)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부적정

① 단순 행동장애자가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② 신체기능저하군: 요양병원

③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달장애 현상

- 1)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일선기관 실무선에 가면 “깎대기 현상” 이 나타나고, 유사중복 292개 복지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을 발견하고도 통합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 수를 증가시킨다. 부서별 업무 상호간에 협조를 하지 않고 칸막이 하여 새로운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정누수 현상을 가중 시킨다.

- 전달체계의 수행 만족도 현대리서치(2013.5.2. 500명)조사에서 만족 38.4%, 불만족 18.0% 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의 조사에서도 불만족이 26.8 % (134명/500명)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지나치게 많은 사업수가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수급기준이 복잡하여 적용이 곤란하고, 사통망이 연초에 집중도가 심하면 장애를 이끈다. 한편 수급자격 요건이 소득조사를 전제로 하지만 이는 조세당국도 어려운 난관인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 2) 개선요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유사중복 프로그램을 통폐합 하는 일이지급하며, 수급기준도 완화하고, 사례현장을 보다 자주 접근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부정누수를 차단해야 한다, 발견된 낭비요인을 보면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이며 신청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관여공무원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전달체계의 공공-민간 협치효과

1) 공공전달의 장애요인

- 사회구조는 인간끼리 연계된 공동체의식(Gemeinschaft)에 뿌리를 두고 동근성(同根性:Common Rootedness)¹⁾에 기초해서 상호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인간끼리의 긴밀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복지욕구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 현상이며, 민간자원의 협치는 사회가 평형성(Homeostasis: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특성임
 -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복지서비스가 민간자원의 협력을 얻어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게 되면 복지지출의 확장적 효과가 발생함
 - 그러나 민간협치가 없이 공공부서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복지지출이 이루어지면 민간의 상호의존연계 고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구충족의 비효율과 미충족 현상이 발생하게 됨

【그림 5】 공공전달의 장애요인

구 분	내 용
공공 경직성	행정규정의 경직성과 절차의 복잡성, 서비스 제공방식의 공급자 위주의 비효율성 때문에 가변적인 복지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결과 초래
전달 분산성	공공전달체계의 프로그램 중복,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일선기관에 집중 갈데기 현상이 발생하고, 상호 협력 연계 협치를 방해
공공 접근성	공공행정의 전달체계는 시군구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고 최 일선 읍면동이나 산간 오 벽지 도서지역은 지역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
자원 제약성	국가의 복지자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의 무한한 복지 복지수요는 민간자원의 “이웃 도움”없이 충족 불능
공공 적시성	공공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공급자 위주로 대상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서비스 자원의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적시제공이 제약을 받음

(자료) 정경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민간 협치”, 2016, 에서 편집

- 공공지출이 민간자원과 협치(Collaboration) 할 때는 이와같은 확장효과가 발

1) Chung, Kyungbae,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2004, Transaction Publishers, USA, P.69. Common rootedness.

생하기 때문에 공공만의 단독으로 정책 수행 할 때와는 비할 바 아니게 범위가 확대됨

- 확장성 효과는 사례에 대한 접근성, 적시성, 자원의 제약성을 해결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며,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국가 예산의 절감과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2) 민간자원과의 협치의 확장 효과

- 반대로 모든 사회복지 자원이 국가의 통제로 관장하게 되어서 공공전달체계만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면 협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부의 승수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지게 될 것임(부의 승수효과)

【그림 6】 민간자원 협치의 확장 효과

구 분	내 용
확장성	민간자원의 바다는 무한한 상호의존성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나누면서 확장해 나감
통합성	민간자원과 협치는 집약적으로 통합처리 되는 성질이 있음
접근성	이웃에 대한 손쉬운 접근은 민간전달체계의 특징임
적시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서비스 필요성을 적시에 대응함
안정성	이웃에 의한 돌봄 민간전달은 귀속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
정보성	모든 정보를 그랩바인식(information grapevine)비공식 전달 ²⁾
상부성	서로 상부상조하며 받은 것만큼 해야림 없이 되갚음

(자료) 정경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민간 협치”, 2016, 에서 편집재인용

- 서비스 공급 주체인 사회복지시설 간 정보공유 및 자원연계가 미비해 동일 대상에 대한 서비스 중복, 사각지대에 대한 미확인 등의 문제 발생
 - (복지사각지대) 수요자에 대한 정보공유 미흡으로 차 상위 계층 등 작은 서비스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은 사각지대로 존재
 - (중복 수혜자) 여러 복지시설에서 수급 대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각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일 서비스가 한명에게 중복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급자의 적응행동(소득축소, 재산은닉, 세대분리, 근로기피, 과잉의료소비 등)은 늘어가지만, 효과적 통제수단 부재

2) 정보전달의 비공식 채널(informal grapevine): 공식조직을 통한 정보전달이 개인에게 전파 될 때는 이웃, 친지, 가족 등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파.

【그림 7】 부서별 유사복지 사업

분야	연계 추진	사업
출산 후 돌봄	연계·조정방안 마련	•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여가부) • 해바라기아동센터(여가부)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여가부) • 성폭력상담소(여가부)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가부) • 스마일센터(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성폭력피해자 지원	연계·조정방안 마련	• 장애인 인권증진(인권위)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복지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연계·조정방안 마련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여가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여가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여가부) •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통일부)
폭력피해 탈북여성 지원	연계·조정방안 마련	• 여성장애인교육지원(복지부) • 여성장애인사회참여지원(여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연계·조정방안 마련	•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 치료지원서비스(교육부)
장애아동 치료지원	연계·조정방안 마련	•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 치료지원서비스(교육부)

6.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방안(복지부)

1)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1992년에 노인복지법으로 변경

- 공공분야(사회공헌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민간분야(시장진입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법 23조에 의거하여 노인취업지원센터: 225개를 운영하고 있다.
 - * 시니어인턴십: 2012년 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 3550명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씩 확충하여 2017년까지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할 방침.
- 연속성과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참여보수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중 운영할 예정임.

구 분	시 작	개 선(2017)
일자리 수	23만개	43만개
노인일자리 (공익·교육형)	9개월 / 월 20만원	10개월 / 월 30만원
노인일자리 (복지형)	9개월 / 월 20만원	12개월 / 월 40만원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종합대책, 2017

2)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 위한 老•老케어 일자리

- 노인의 능력과 의향에 따라 다양한 돌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노케어사업유형 세분화 및 다양화
- (현행) 말벗·안부확인,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 종합적으로 수행
- (개선) 현행 사업단 외에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단(도시락배달), 일상생활지원 사업단(가사활동보조) 신설

노노케어 사업단 참여노인 고충 사례

나도 나이가 많은데 남의 집에 가서 말 시키고 집안 청소 등을 전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다른 일자리 모집에서 탈락하면 참여할 계획(여, 75세)

3) 사회공헌 활동의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충(복지부)

- 학교·경로당·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력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
 - * 학교 CCTV 모니터링 및 순찰, 경로당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 병원에서도서봉사 등
-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불충분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와 연계·보완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노인자살 및 고독사 예방활동,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 식사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보조, 아동·노인의 학대예방 및 권익증진, 독거노인 안전 등

4)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복지부)

* (시니어인턴십) 극장, 편의점 등에서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 현장훈련을 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되도록 지원(최대 6개월, 45만원)

- 노인적합 직무개발 및 현장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인턴십 종료 후 취업률을 현행 37%에서 2017년까지 50%로 향상
- 공공기관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시니어인턴십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노인 취업기회 제고

5)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 확대(복지부)

- (시니어직능클럽) 직능단체 및 직장퇴직자들이 일자리 공동체를 설립하는 경우 운영비, 활동비 등 지원(7천만원 이내). 주된 직장에서 은퇴 연령(53세)부터 연금수급 연령(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가입연령 제한을 완화
- 직장 및 직능특성을 반영한 재능나눔 활동에 대해서는 ①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로 연계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유도하고, ② 사회적 협동조합, ③사회적 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노인일자리 창출하도록 지원

[발 표 1]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김 미 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2000년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가 넘어서면서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7년 4월 현재 전체 인구의 13.8%로 올해 안에 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통계청, 2017). 평균수명의 증가와 지속된 저출산(1984년 1.7명에서 2015년 1.239명)은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령인구의 증가는 지속되었고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노인세대 인구구조가 점차 바뀌어 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의 증가는 노인 인구층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955년에서 1963에 출산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 복지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이제까지는 당면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끌려 다녔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의 72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부머들이 쓰나미처럼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이 시기에는 이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아마도 이는 개인적으로는 노년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며 사회적으로는 노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 또는 사회가 노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노년기를 지내게 할까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활기찬 노후(active aging)’, ‘생산적 노후(productive aging)’,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개념들은 과거의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인과 노년기의 긍정적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이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노년층은 이미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될 수 없다. 부자노인과 빈곤 노인, 건강한 노인과 의존적 노인, 젊은 노인과 고령노인, 여성노인 등 양분화되고 다층화 된 노인세대는 각기 다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보장이라는 안전망에서 보호되고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노인복지이며 사회의 책임이 될 것이다. 사회보장의 양축인 소득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노인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중요하다. 노인 개개인이 사회에서 보호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있다는 복지체감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경험된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자신이 이용 가능한 공적/사적 공간에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현실성이 없게 된다. 개별 노인들은 복지체감도가 떨어지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도 사회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결과는 개인노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본 발표는 노인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현 노인복지현황과 새 정부의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인구학적 변화와 베이비부머

1. 인구학적 변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처음 노년기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7.3%를 차지하면서 2015년에 13.1%에 비하여 약 4%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 이러한 변화 추세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이 지속되면서 점점 가속화되는 것으로 1963년생인 마지막 베이비부머가 65세에 돌입하는 2028년에는 29.6%가 노인인구로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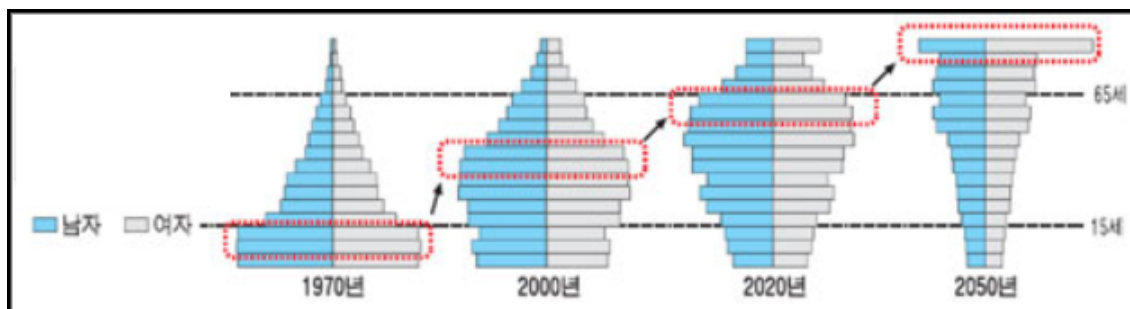
〈표 1〉 노인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중

	2015	2020	2023	2028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비율	13.1%	17.3%	21.5%	29.6%
노인인구 중 베이비부머비율	0%	7.8%	25.8%	47.6%

주) 2015년: 베이비부머의 시작세대인 1955년생이 60세가 되는 해
 2020년: 베이비부머의 시작세대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해
 2023년: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이 60세가 되는 해
 2028년: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해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추계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것은 실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의미 있는 현상이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이비부머들의 이동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10대였던 그들은 2000년, 2020년의 청장년의 시기를 거치며 항상 당대의 대표적인 인구층으로 자리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모든 베이비부머가 80대 이상의 후기 노인이 되는 2050년에는 후기 노령층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흐름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모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 베이비부머의 이동에 따라 종형을 거쳐 반추형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2050년에 이르면서 역피라미드 형으로 전환되었다. 즉,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가 출산율의 현저한 감소와 맞물리면서 1970년대의 피라미드에서부터 2050년의 역피라미드 형으로 전면적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출처: 주간동아 <http://weekly.donga.com/List/3/all/11/75899/1>

〈그림 1〉 베이비부머의 이동에 따른 인구변동

2. 베이비부머의 특성

노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논하기 전에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60세를 넘어 65세로 진입하게 된다. 이들은 전 세대와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아래는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성을 간단히 소개하며 어떤 욕구가 있는지 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베이비붐(Baby boom)세대는 전쟁 또는 불경기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태어나게 되는 인구 코호트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되기 전인 1963년까지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2015년부터 60세 노인층으로 진입 (2017년 현재 54세~63세)하여 2050년에 인구의 38.2%가 노인층이다.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부모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국가성장발전을 이끌어가는 인적자원의 역할을 하였다. 베이비붐세대는 역사적 격동기를 지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세대라 하겠다. 유년기였던 1960년대는 빈곤의 시대를 지나왔고, 1970년대 청년기에 유신시대를 맞이하고 1980년대에 사회로 진출, 산업화가 가져온 경제적 풍요로움과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 사이에서 갈등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

의 신화가 IMF위기로 이어지면서, 위로는 승진에 대한 불안과 해고 가능성에 직면했고 아래로는 신세대 후배와의 정서적 단절로 이중고를 겪었다. 베이비부머는 인구 밀도가 높은 세대로 생애 단계마다 경쟁적 경험을 했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대이며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다. 이 과정에서 베이비붐세대는 사회적 변화를 갈구하면서도 가정의 안정을 추구하는 이중 잣대를 갖게 되었으며, 이념적으로도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세대라는 특징을 가졌다(정성호, 2006).

아래 <표 2>를 보면 연령 코호트에 따라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기준으로 연령이 많은 층은 예비노인층과 노년층으로 나뉘고 베이비붐세대 아래 연령대는 이들의 자녀인 X세대이다. X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경제발전을 이룬 부모를 두어 풍요롭게 지낸 세대이다.

예비노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세대로 빈곤한 시대에 성장하였고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 반공의식이 강한 사회에서 성장하였다.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는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하였고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같이 겪어냈기 때문에 세대 간 특성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하겠다. 노인세대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이전을 겪었으나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가족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표 2> 세대 간 비교 및 특성

구분	출생연도	특 성
X세대	1964년 ~ 1976년	•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경험 • 자유분방, 자기중심적, 다양한 가치관 추구
베이비붐세대	1955년 ~ 1963년	• 인구학적 과밀, 과잉 경험하며 성장 • 치열한 경쟁 경험 • 유신세대로 민주화위해 투쟁한 세대 • 1980년대 국내 경제성장 뒷받침
예비노인세대	1946년 ~ 1954년	•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세대 • 청소년 시기에 빈곤경험 • 청년기에 출산억제정책, 반공의식함양, 월남전 등 경험
노인세대	1945년 이전	• 청소년기 조선해방, 대한민국수립, 한국전쟁과 보릿고개 경험 • 성인초기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 • 유교주의와 가족주의 영향 • 개인보다는 가족과의 관계 중시

출처: 김미혜 · 정순돌(2015). 한국의 베이비부머의 삶과 미래. 서울: 학지사.

일반적으로 노인을 노년층이라는 하나의 세대로 여기지만 실제로 위와 같이 연령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겪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는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궤적에 따른 어려움과 욕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노인세대는 베이비부머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노년기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질 높은 삶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된다. 현재 노년기에 있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건강하고 활기차며 능동적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노년기에도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노인세대에게 각기 필요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개인 및 사회적 비용절감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3.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하나,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학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다. 아직까지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s), 사회적 보호(social care)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강혜규, 2007). Johnson(1995)은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보는 반면에 Baugh(1987)는 사회서비스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강혜규, 2007 재인용).

지은구 외(2017)는 사회서비스를 개인 혹은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이며,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며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2012년에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4호에 정의된 것으로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017: 21-22).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정의 내에 사회복지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S. Tolbin & Tosenl(1990)은 사회서비스를 소득, 의료, 고용 및 취업, 주거를 제외하고 인적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보고 <표 3>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재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및 시설서비스로 교차하여 구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교육, 문화, 환경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표 3〉 사회서비스 모델

서비스	재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시설서비스
최소한 기능저하	- 전화안부 - 주택개조	- 지역센터 - 노인시민학교 - 상담	- 공동시설 - 거주시설
중간 수준 기능	- 가정방문 - 사례관리 - 도시락배달	-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센터 1차 보호 Unit - 복지센터	- 임시 - 주간 생활지원 주택 - 시설
제한된 기능	- 보건유지 - 방문간호 - 완화치료	- 주간보호 Unit - 주간병원보호 - 단기보호	- 병원 - 특수병원 - 재활 병원

Ⅲ. 노후를 보는 관점과 활기찬 노후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이들의 노년기 진입은 인구구조의 양적변화 뿐만 아니라 인구특성의 질적 변화도 가져왔다. 노인으로서의 베이비부머는 현 노년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대 간 구분이 생기게 되었고 서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문제 중심 혹은 즉흥적인 서비스제공은 노인복지를 발전시키고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긴 터널과 같은 고령사회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노인복지를 끌어갈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노후라는 생의 단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답이 한 나라의 노인복지를 이끌어 갈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생산적 노후, 활기찬 노후, 성공적 노후의 개념이 제시된다.

1. 노후에 대한 관점

1) 생산적 노후 (Productive Ageing)

생산적 노후는 Butler & Gleason(1985)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서 고령자의 생산성 및 생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고령자가 생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면서 나타난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 제시하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유급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손·자녀 양육, 친지나 친구를 돕는 활동이 포함된다(Herzog&House, 1991).

이와 마찬가지로 Glass(1995)는 노인의 생산적 노후 활동을 가사노동, 정원관리, 손·자녀양육, 유임금 노동, 자원봉사의 5개 영역으로 제시하였고, 윤순덕, 한경혜(2004)는 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원조활동, 친척원조활동, 이웃 및 친구 원조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학자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에 보다 강조를 두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학자(최희경, 2010)도 있지만, 유임금 노동에 비해 오히려 다양한 사회참여활동과 자원봉사가 사회적인 가치와 기여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임을 강조한 학자도 있다(김미혜, 2001).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 가치를 유지하는 개념과 더불어 개인이 활동적이고자 하는 동기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활기찬 노후를 위한 조건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Hanka & Stucka, 2008).

생산적 노후의 개념에는 노인이 여가를 즐기는 소모적인 집단이라거나 사회에 부담을 주는 집단이라는 기존의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져 있으며, 노인의 활동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규원, 1997).

2) 활기찬 노후 (Active Ageing)

활기찬 노후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노년학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시한 개념적 틀이다. 이는 2002년에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으로 재정립되었다. 2012년에는 MIPPA의 10주년을 맞아 활기찬 노후와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로 활기찬 노후의 개념이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천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표 4〉 유럽에서의 활기찬 노후 개념의 변천

년도	내용
1993년	유럽노인의 해: 고령사회정책의 필요성 강조
1999년	UN 세계노인의 해: 고령자 취업에 대한 강조
2000년	리스본 전략: 고령자 고용정책 강조 → 생산적 노후 개념 강조
2002년	UN 마드리드 세계고령화회의 국제 계획(MIPPA) 수립 WHO 세계보건기구의 활기찬 노후 정책 패러다임 발표
2006년	EU 집행위원회 ‘유럽의 인구학적 미래: 위기에서 기회로’
2012년	MIPPA 10주년: 활기찬 노후와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 → 활기찬 노후를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천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로 전환

활기찬 노후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노년기에도

중·장년기처럼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경우 긍정적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맞을 수 있다고 보았다(권중돈, 2010).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활기찬 노화의 개념을 노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의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WHO 세계보건기구의 활기찬 노후 영역

활기찬 노후의 영역	건강	개인의 건강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증진 요인을 최대화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가능, 의료서비스·요양서비스 이용 감소 목표
	참여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고령자들이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적 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기에도 보수 또는 무보수로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안전	노년기에 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활기찬 노후는 UN의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에 기초하여, 과거 욕구중심의 전략에서 현재는 노인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 활기찬 노후의 접근법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고령친화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3) 성공적 노후

성공적 노후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Rowe & Kahn(1986)이 Successful Aging을 언급하면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성공적 노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성공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현재 학자마다 다르게 바라봐지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 결과, Ryff(1989)는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유성, 환경에의 숙달,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으로 노후의 성공을 설명하며, 홍현방(2002)은 보다 포괄적으로 심리적 측면, 사회관계적 측면, 신체건강의 측면과 정신건강 측면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등 학자들마다 성공을 정의하는 수준과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공을 다루는 영역은 유사하여 신체 및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박경란, 이영숙, 2002; 홍현방, 2002; Rowe & Kahn, 1997; Rowe & Kahn, 1998)하고, 사회적으로 교류(박경란, 이영숙, 2002; 홍현방, 2002; Ryff, 1989; Rowe & Kahn, 1997; Rowe & Kahn, 1998; Charbonneau, Mosher, & Stanford, 2002)하는 삶에 대해서는 공

통적으로 성공의 주요 측면으로 보고 있다.

성공적인 노후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성공이 갖는 독특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노후의 성공을 판단하는 것에는 노인이 갖는 보편적 특성이 중심이 될 지라도 그 이상으로 시대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서구 사회의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성공적 노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강인(2003)은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을 성공적 노후를 위한 구성요소로 포함하였고, 김미혜 외(2004)는 9가지 복을 언급하며 부부, 자녀, 친구, 재산, 여가, 건강, 죽음, 거처, 마음의 복으로 한국적 상황에서의 성공적 노후를 제시하였다(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이후 김미혜, 신경림(2005)은 성공적 노후를 한국적 문화를 반영하여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김미혜, 신경림, 2005)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자녀, 부부 등 가족에 대한 요소가 성공의 주요한 요소라는 특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으로,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가 다양한 만큼 어느 정도 달성되어야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 성공적 노후는 성공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달성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한 다수의 노인들의 삶을 실패한 노후로 규정짓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Glass, 2003).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상의 건강이 유지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 자기 개발, 가족관계 등의 성공적 노화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이홍직, 2010)와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성별, 거주 지역, 학력,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노후를 성공적으로 잘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성공적 노후에 대한 ‘초월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탐색적 연구가 등장하였다(임연옥, 윤지영, 석재은, 2013). 특히 앞으로 노년기에 진입할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여유롭고 활동적인 삶,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 변화의 수용과 정갈한 삶 정리 등 3개의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권금주, 2013).

위와 같이 생산적 노후, 활기찬 노후, 성공적 노후의 세 관점을 살펴본 결과 본 발표자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노후정책이 활기찬 노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4) 왜 활기찬 노후인가?

활기찬 노후는 고령자들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존재이자 부양의 대상으로 여기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사회적 부담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서 노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을 가진다.

이러한 활기찬 노후는 생산적 노후가 고려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는 생산적 노후에 비해 노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모델로서 노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성공적 노후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성공적 노후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수의 노인들을 실패자로 낙인찍을 수 있으며, 노인 세대 내에서의 배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정책 기조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여전히 고용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활기찬 노후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여, 향후 경제활동 뿐 만 아니라 교육, 가정생활, 지역사회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활기찬 노후 개념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현 시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으로의 진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들은 교육수준, 건강, 노후 준비 등에 있어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성향의 노인들에 맞춘 사회복지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V. 노인복지서비스의 현재

현재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일자리, 건강, 돌봄, 사회참여(여가, 자원봉사, 문화활동, 학습)로 나누어질 수 있다.

노년기의 문제로 보통 4고를 논한다. 이중 소득이나 건강은 장기간에 걸친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고 단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복지체감도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개념이기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직접 겨냥하고 있는 사회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높아진다. 노인 대상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복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알게 되고 복지체감도는 높아진다. 문제는 이런 사회복지 체감도가 현실성 있는 서비스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지원을 못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자격이 안 되거나 서비스 자체가 없는 경우,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등의 이유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그런 노인복지서비스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노인일자리 서비스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공식명칭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이며, 명칭이 다르듯이 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7a). <표 6>을 보면 우선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부여한 유형으로, 참여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참여 자격기준을 보면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라는 경제적 조건이 한정됨으로써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사업에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봉사료 분류된 만큼 주된 활동은 본격적인 시장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주로 공공 분야³⁾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익활동은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과 같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능나눔활동은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공적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7a). 공익활동은 전체 사업량의 68.2%, 전체 참여자의 67.6%가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참여자는 2016년을 기준으로 9-12개월 가량 활동하면서 월 20만원(2017년부터 22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약 60%가량은 공공시설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이상인 54%정도가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의 일환으로 환경개선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그 뒤를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이 따르고 있다.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이다. 주로 6개월간 활동하며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2016년 39,900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2016년부터 시니어직능클럽이 고령자친화사업의 세부유형으로 포함됨)으로 세분화되고 있고(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본격적인 시장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기

3) 김우주(2016)는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공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민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자격기준 또한 관련 유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6). 대부분 사업단은 정부의 일정부분 지원 외에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특징이 있다(보건복지부, 2017a).

시장형 사업단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업단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2016년에 참여자는 평균 19-34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사업에 참여하였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사업단은 노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꾸려진 근무처인 반면에 이외의 사업들은 일반 기업 및 기관에 노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력파견형사업은 참여자를 특정 수요처로 연결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으로(보건복지부, 2017a) 참여자는 약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평균보수는 월 100만원 가량으로 일자리사업 중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시니어인턴십은 노인에게 기업의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취업은 물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의 형태로 6,730명의 참여자가 활동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우는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과 달리 노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3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원자격이며(보건복지부, 2017a), 고령친화기업에서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은 2016년 월 평균 93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이 외에 시니어직능클럽은 2016년부터 고령자 친화사업에 포함되게 된 사업으로 엄밀히 구분하면 고령친화사업에 구분되어야 하나 현재 따로 실적이 보고되어 있어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시니어직능클럽은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참여자는 월 평균 160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으며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이처럼 현재 노인일자리서비스는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과 같은 노인사회활동 부문의 경우 봉사료 분류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참여자의 수는 전체의 7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로 구분되는 노인일자리부문에서도 보수가 낮은 시장형일자리에 대부분의 참여자가 몰려 있으며,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시니어직능클럽 포함)의 경우 참여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이 겸비되어야 함에 따라 높은 보수가 지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 노인일자리서비스(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지원서비스) 현황 및 주요 특성

구분	유형	참여자 수(명)	평균참여 기간(월)		월평균임금 (천원)	주요내용		선발기준	운영기간	지원내용
			'15	'16						
노인 사회 활동 :봉사	계	'16 429,726	-	-	'15 16	-	-	-	-	-
	공익활동	290,625	-	-	200*	200*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9~12개월/월 30시간이상 (일 3시간 이내)	1인당 연194~156만원 (월20만원급여지원)
	재능나눔활동	40,163	-	-	100*	100*	•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 나눔 활동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생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유도		6개월 (월 10시간)	참여자별 월 10만원 이내 급여지원
	시 장 형	계	-	-	-	-				
노인 일 자 리 :근로	사업단	77,734	-	-	-	-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연중 (1일 8시간 내 근무) (근로계약서외거)	1인당 연 194~200만원
	공동작업	10,665	8.2	8.2	258	275				
	제조판매	14,093	8.5	8.5	333	347				
	전문서비스	52,976	-	8.2	-	197				
노인 일 자 리 :근로	인력 파견형 사업단	12,557	5.8	4.7	940	1,018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연중 (근로계약서외거)	1인당 연 15만원
	시니어 인턴십	6,730	-	-	-	-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		근로계약서 외거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1545	192.8 (일)	155.5 (일)	880	937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최소 30명 이상)하는 기업설립지원		기업·기관별 운영규정에 따름	-
	시니어 직능클럽*	372	-	-	1,789	1,680				

주)*2016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에 포함/ *개인별 인건비 지원기준으로 공익형은 매달 최대 20만원(2017년부터 22만원), 재능나눔형은 최대 10만원이 지원됨.
 <출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7). 2016노인일자리 통계동향. 고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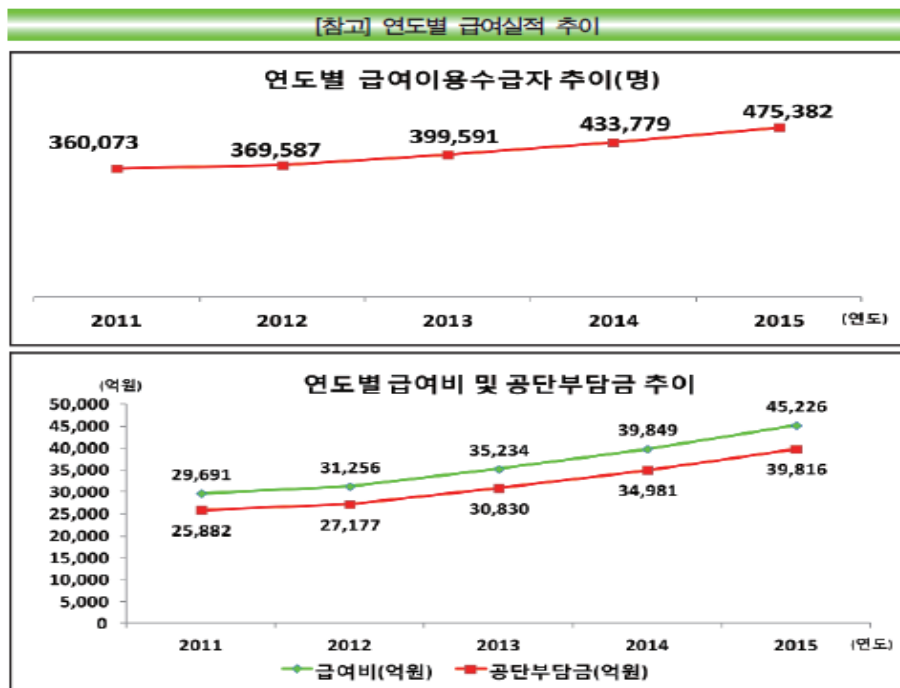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16, 2017a).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2016). 노인정처정책 진단과 발전전략 모색.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돌봄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노인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요 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가장 대표적인 노인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정책으로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가 사회보험의 한 부문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등급판정조사를 통해 1~5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시설급여(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복지용구 혹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2015년 말 기준, 등급인정자는 총 467,752명으로 전체 신청자 789,024명 중 59.3%가 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급여이용수급자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연간 총 급여비는 4조 5,226억원으로 이는 2014년 대비 3.2%가 증가한 수치이다(국민건강관리공단, 201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2〉 연도별 급여비 및 공단부담금 추이

둘째,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구분되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환경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먼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주 대상으로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 서비스,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보건복지부, 2017a), 약 20만명의 노인(2014년 기준)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이상),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7a). 이 외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일환으로 단기가사서비스와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가 포함되고 있으며, 단기가사서비스는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수술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2개월 내에 한정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6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은 약 45만 명으로 105,683백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된다(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셋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 가정봉사원과전센터에서 전환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는 서비스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하여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7a). 2016년 기준 전국 390개소가 운영되면서 주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재원, 여가활동지원 등 직접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예방적 사업과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그리고 위기지원서비스 등의 긴급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c).

넷째,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이다.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에 노출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고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에 29개의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7a;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7). 2016년에 보고된 학대사례는 총 4,280건으로 15년(3,818건)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7).

다섯째,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이다.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이 운영되어 왔다. 전국 거점지역에 17개소의 광역치매센터를 비롯하여 2015년 기준 전국 253개의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진단·감별검사를 제공하는 치매검진사업, 자격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치매진료·약재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이 외 치매노인 배회인식표보급, 치매환자등록관리, 방문관리, 사례관리 등을 실시한다. 치매 노인의 증가에 따라 치매상담센터의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5년 63,320백만원이 투입되어 2010년에 비해 약 2배가량 많아졌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수는 302,492명으로 전국에 추정된 치매환자의 약 46.7%가 치매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중앙치매센터, 2017). 그밖에 연간 총 치매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6조 1,418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2.1배였으며 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에서도 치매에 대한 급여비용이 전체의 59.9%로 2014년 기준 약 2조 4,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6).

3. 사회참여활동

1) 여가활동

여가는 노년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노년복지관은 경로당과 노인교실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은 지역마다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여가시설로는 가장 많은 수가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을 고려하면 노인복지관의 수는 아직 적다.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관(463개, 2017년 기준)(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충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지역에서 노인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사회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7〉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변화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소 계	63,375	64,077	64,983	65,665	66,382	66,787
노인복지관	281	300	319	344	347	350
경로당	61,537	62,442	63,251	63,960	64,658	65,044
노인교실	1,557	1,335	1,413	1,361	1,377	1,393

출처: 보건복지부(2017c). 노인복지시설 현황(2016. 12. 31. 기준).

2) 자원봉사활동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복지법 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 등의 법적 기반으로 2007년도에 시작되었다. 2011년부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자원봉사 클럽 조직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1,831개의 클럽에서 33,856 명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비로는 4,299백만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실행되어 오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는 2016년 기준 5,090명이 참여하며 6억 6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제공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노인복지관 한 곳당 평균 8개의 봉사단을 통하여 157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고 4만 721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를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도 기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나 경력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4.5%에 불과하지만 희망률은 20.7%인데, 이러한 차이는 특히 도시 지역 노인과 남자 노인에게서 크게 나타난다. 동부 노인의 22.2%와 남자 노인의 23.8%가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참가율과 약 17%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경희, 2016). 이러한 차이는 현재 노인이 참여할 만한 자원봉사활동이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3) 문화활동

여가활동의 성격상 보건복지부에서만 제공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비록 문화체육관광부서의 사업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문화 활동을 개발하면서 실제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문화 활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2015년 5월 18일 제정되었고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6년에 391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문화예술 교육지원사

업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기관 200개에 6,5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예술 정거장에는 2015년 39개 시설에 57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 다양한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문화 여가 인프라 개선, 문화이용권을 도입하여 노인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학습활동지원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이 되더라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재교육을 통해 일자리 및 사회생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사회교육법이 1999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개칭되어 평생교육을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하였다. 주요 목표는 일-학습-능력 연계를 위한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제 구축, 사회 통합을 위한 생애 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창조 경제 견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이다. 특히 노인에게 적용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은퇴 인력을 활용한 교육 기부 활성화와 더불어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갈 예정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사업에서 실버세대특화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평생교육 진흥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2015년 현재 16개, 시도 문화원 연합회/세종특별자치시 하에 228개가 활동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연령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노인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능동적 사회참여증진을 목적으로 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배움’에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문화 재능기부 활동·문화 동아리 활동·어르신 문화 축제 등 어르신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2016년의 경우 39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문화원연합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예술문화(41.5%), 건강관리/운동(36.0%), 어학(10.4%), 인문학(6.9%), 취업/직업(1.1%) 등의 순서로 참여하고 있고,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24.2%) 시군구읍면동 24.3% 문화예술센터(14.4%), 종교(9.3%), 사설문화센터(8.2%), 대한노인회(2.4) 순이다(정경희 외, 2010).

V.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내세운 대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성장과 질

- 1) 2017년 현재 43만개 노인일자리를 80만개 개발하여 제공할겠다는 공약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공약과 맞물려 있다. 노인세대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체감도는 낮고 또한 목표달성의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하겠다.
- 2) 노인을 신중년으로 지칭하고, 기존의 노인일자리 수당 20만원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사회활동 참여 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적기여를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력파견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 자친화기업을 제외한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사회활동과 비슷하게 참여기간의 제한과 활동비로 월 20만원 내외를 받고 있다. 일자리는 노인에게 있어 독립성,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의 기회를 제공하나 현 사회에서 노인일자리란 경제적 의미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현재 제공되는 수당 20만 원짜리 일자리사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로의 진전을 위한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신중년에 대한 정의도 없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모호하다. 이들을 위한 공약이었다면 이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 3) 사회적 기여에 찾는 일자리 공약은 ①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 ② 은퇴한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기업육성 ③ 신규 사회·공공서비스(국공립어린이집, 방과후교실, 한부모가정통합돌봄서비스 등)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 ④ 우리 동네 어르신 돌봄서비스(공공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협동조합형 요양원 등) 확충 등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시된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로, 사업 나열이 아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현실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2. 돌봄의 질적 향상

- 1) 보육·장기요양·치매·장애재활·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여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거나 보육과 장기요양을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서비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관료주의적 운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행정비용 증가는 물론 기존의 민간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회서비스의 인프라를 해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결행 시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민간서비스 제공시설 지원 및 운영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는 민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인다.

3. 보건의료

- 1)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문재인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서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하고, 노인부부(단독세대)가구까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 하겠다.
- 2) 국가치매책임제는 현재 치매대상 복지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국가의 책임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치매책임제의 세부내용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실시,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 지정하여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등의 사회복지권을 위한 그룹홈, 단기·주야간 보호시설 등 확충,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충이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치매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비중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 3)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는 주로 낙도지역에서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이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낙도 지역의 건강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위급 상황 시에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근 병원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에 어업안전보건센터 활동을 활성화한다도 실제 문제인 응급 상황 시 이송 문제해결이나 상주하는 보건지소 등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빠져 있어 노인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부족하다.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더하여 응급이송을 할 수 있는 구급선을 보다 더 확보한다던지, 병원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에 상시로 공공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를 제안한다.

- 4)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으로 보다 더 나아간 의료서비스로 큰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4. 주거

- 1)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어르신 가구용 주택을 할당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이 살기 좋은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잘못 운영하면 노인을 사회에서 분리하거나 노인 및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또 다른 차별받는 지역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후주택개량사업의 추진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 2)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를 위하여 마을 회관 등을 지역 맞춤형 급식센터로 리모델링 및 주방기기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사회참여 증진

- 1)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발하고,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경로당의 경우 기존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실버극장’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상영을 늘린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며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실버극장이라도 연령통합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또한 관련 공약으로 고령친화적 실버관광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을 약속하였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와 같은 건강한 노년층에 있어 여행을 통한 여가의 적극적인 선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을 현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코레일 등과 연계한 할인제도의 도입, 관광상품의 개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농어촌 노인의 이동지원

- 1) 살기 좋은 농산어촌 및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에서의 100원 택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택시운전사의 생존권과 권익을 향상시켰다는 의도로 100원 행복택시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행복택시는 농어촌형 마을택시로 활용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농어촌의 교통이 도시지역에 비해 이용하기 불편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40%가 노인임을 감안해 볼 때 낙후지역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국가 지원의 사회복지서비스이며 복지체감도가 높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다분히 택시운전사라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된 것과, 왜 ‘100원’ 인가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분히 아쉬움이 있다. 특히 실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에서는 교통비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에서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7. 지역복지인프라 강화

- 1)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대 및 복지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복지 인프라 강화하기 위해 사례발굴 및 맞춤형 복지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 지역복지 인력 확충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시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가칭)

- 1) 공공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

력을 채용하여 시설에 제공하고, 인력채용 및 자격관리 일선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 기관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한다. 시작은 보육영역과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시작하여 향후 모든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과 기능에 따르면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목적을 보면 서비스 공공성, 인력의 고용환경개선(정규직), 일자리 창출이다. 결국 사회서비스공단도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하게 되어 현 정부의 일자리 확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사회복지서비스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전달을 관리할 때의 문제이나 민간서비스 기관과 인력문제 등 차이를 극복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2) 도시보건지소 및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하여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확충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VI. 제 언

첫째, 향후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베이비부머들의 노년기 진입은 새로운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땀질 하듯이 만들어진 노인복지서비스로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노인복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제안한다. 활발한 사회활동과 이를 뒷받침해준 높은 교육수준,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중심의 삶 등 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여 노인인구에 대한 비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활기찬 노후”의 패러다임을 근거로 베이비부머의 욕구에 반응하는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같은 특성과 문제를 가진 하나의 집단은 아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베이비부머에게도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건강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건강하지는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노인과는 다른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경험과 능력이 있는 노인과 부족한 노인들 간의 일자리는 달라야 한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와 자신이 재능이나 교제와 같은 목적을 가진 노인들 간에 요구하는 일자리는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될 수 있는 노인들이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것은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적극적 사회참여를 하며, 정체감을 회복하고, 자아실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다. 노인들이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 복지를 체감하는 것이고 서비스의 현실성 또한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전달되어야 할 대상노인의 수와 서비스 양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다르다. 대상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전달되어야 할 서비스 양이 많아질수록 그에 대비하여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서비스 성격에 맞는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들, 즉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때에 따라 필요하게 된다. 서비스에 필요한 종사자들과 종사자들의 수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노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책임과 자기부담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각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들이 모든 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지불 능력이 있는 복지수요자는 시장의 내외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복지수요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서비스 성격과 요구에 따라 개인 부담은 앞으로 당연히 여겨져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보다 베이비붐 세대는 개인 부담이 높아질 것이고 개인부담 없이는 노인복지서비스 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책임과 자기부담간의 형평성 있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 복지체감도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주어질 때 느끼게 된다. 현실성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현실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도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현실성이 높은 것을 우선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찾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일자리가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대상의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가 활용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를 위해 100원 택시를 제공하면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100원의 혜택으로 이동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택시회사들은 얼마나 많은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노인복지와 택시운전사의 복지는 분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자리인지, 혹은 노인복지증진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_____(2016).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60-472.
- 강혜규(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6-22.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권금주(2013).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1009-1022.
- 권중돈, (2010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규원. (1995).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의식: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총, 7, 213-255.
- 김기웅, 김한나, 안호영, 김유정, 황지은, 김빈나, 남효정, 나리영, 변은진(2016). 대한민국치매 현황 2016. 세종: 보건복지부. 성남: 중앙치매센터.
- (김규원, 1997).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의식: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총, 7, 213-255.
- 김미령(2013). 준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2, 257-288.
- 김미혜(2001). 생산적 복지와 노인고용정책. 사회과학연구논총, 7, 187-213.
- _____, 신경림, 강미선, 강인(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 79-95.
- _____, 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 35-52.
- _____, 정순돌(2015). 한국 베이비부머의 삶과 미래. 서울: 학지사.
- 김우주(2016). 노인일자리아업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박경란, 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 53-66.
- 박영란(2013). 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정책 패러다임. 유럽연구, 31(1), 135-158.
- 보건복지부(201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2017a).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2017b). 2017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2017c). 2017 노인복지시설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성혜영, 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윤순덕, 한경혜(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7.

- 이연숙(2010).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7(2), 19-43.
- 이흥직(2010).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노인의 주관적 인식. *노인복지연구*, 50, 73-94.
- 임연옥, 윤지영, 석재은(2013).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초월적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25-45.
-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성호(2006). *중년의 사회학*. 파주: 살림.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7).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
- 중앙치매센터(2016).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성남: 중앙치매센터.
- 지은구, 김은정(2017).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이용자재정지원. 서울: 나눔의 집.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홍현방(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 245-25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2016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고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태영, 신교수, 이주일(2016). 중고령 근로자의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의 영향요인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2), 137-163.
- Butler, R. N., & Gleason, H. P.(1985) *Productive ag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Charbonneau-Lyons, D. L., Mosher-Ashley, P. M., & Stanford-Pollock, M. (2002). Opinions of college students and independent-living adults regarding successful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8(10), 823-833.
- Glass, T. A., Seeman, T. E., Herzog, A. R., Kahn, R. L., & Berkman, L. F. (1995). Change in productive activity in late adulthood: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B, S65-S76
- Hanka, K. & Stucka, S. (2008). Volunteer work, informal help, and care among the 50+ in Europe: Further evidence for ‘linked’ productive activities at older ages. *Social Science Research*, 37(4), 1280-1291.
- Herzog & House, 1991
- Herzog, A., & House, J. S. (1991). Productive activities and aging well. *Gener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 Rowe, J. W., & Kahn, R. L.(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 143-149.
- Rowe, J. W., &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Rowe, J. W., & Kahn, R. L.(1998). The structure of successful aging. *Successful aging*, 36-52.
- Ryff, C. D.(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1), 35-55.
- Tolbin, S., & Tosenl(1990)Walker, A., & Maltby, T.(2012). Active Ageing: A Strategic Policy Solution to Demographic Ageing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1(S1), 117~130.
- Walker, Alan and Tom Maltby. (2012). Active Ageing: A Strategic Policy Solution to Demographic Ageing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21, No. Supplement S1, 117-130.
- 사회보장기본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CFBC46B69EED45C5A7C04AC11500CFC4|0|K

사회적기업육성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9FB4C4CF02544F4BAE4F0D727EDC6E2|0|K

대한노인회 홈페이지 www.koreapeople.co.kr/ (2017. 06. 2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2017. 06. 2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2017. 06. 24.)

통계청(2017). <http://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 (2017.05.04.)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or.kr:8080/dspv1User/UserMain.do> (2017. 06. 2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
(2017. 06. 24.)

[발 표 2]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전 용 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전용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차

- 본 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의 결과와 개선방안 제언
-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주요 내용
- 공약의 평가: 본 연구결과의 개선방안과 공약 반영여부

연구목적과 이론적 가정

- 연구 목적: ‘돌봄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의 측면에서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영역에서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공약 정책을 평가하는 것
- 연구 질문: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가 노인의 기능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노인의 기능상태의 변화와 복합적인 욕구에 맞게 서비스 간에 연계가 되고 있는가?’

연구목적과 이론적 가정

- 돌봄의 연속성: 노인 기능 상태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
- 이론적 가정: 돌봄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의 측면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해서 노인이 최대한 삶터에서 노후를 보내고 (Aging In Place) 시설에서도 적절한 서비스와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본 연구 분석틀:

노인의 기능상태별 주요 이용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

<노인의 기능 상태별 분류>				
주요 이용 서비스	4) 중증 말기 노인	3) 장기요양노인 (1-5등급)	2) 허약노인 (등급 외 a, b/ 독거/ 저소득층)	1) 건강노인 (만성질환 보유)
	- (요양)병원(다수) : 주로 2차, 3차 의료기관		- 주로 1차, 2차 의료기관	
	- 의료가정 간호서비스	- 시설서비스 (요양원 등)	- 보건소(건강증진, 방문간호서비스), 치매상담센터, 건강검사 등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등)	- 등급외자 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등급 외 a, b 노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각지대 노인) 등	

연구결과1:

노인의 기능상태와 의료, 보건, 복지의 영역별 주요 이슈

노인의 욕구 / 건강 서비스 영역	(1) 의료 (병원, 의원 등)	(2) 보건 (보건소, 간호 등)	(3) 복지(돌봄)
1. 건강한 노인/ 만성질환보유 노인	-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주치의' 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예방 기능 취약 -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의 구분과 역할이 불분명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건강관리군 등이 주요 대상 - 노인의 생애주기검진은 66세에만 이뤄짐. 이후에도 필요함	
2. 허약노인 (등급 외 a, b로 기능일부제한/ 독거, 저소득층 등의 노인)	- 의료와 보건의 연계 미흡	-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재가서비스 -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인력부족으로 진단, 상담 위주의 기본서비스 제공 - 예방적인 기능 수행 한계 - 복지와 보건의 연계 미흡	- 보건과 돌봄의 공식적 연계체계 부재 - 단순 안부확인과 가사수발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 -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혼잡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 - 등급내자의 서비스와 연결이 안 됨: 건보와 지자체의 역할 부족

연구결과1:

노인의 기능상태와 의료, 보건, 복지의 영역별 주요 이슈

노인의 욕구 / 건강 서비스 영역	(1) 의료 (병원, 의원 등)	(2) 보건 (보건소, 간호 등)	(3) 복지(돌봄)
3. 장기요양대상노인 (등급내자/ 1-3등급 또는 4-5등급)	- 요양원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적: 촉탁의 활용의 한계 - 의료이용과 장기요양과 연계 부족	- 노인의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 위축 - 재가에서 적절한 간호 서비스 등의 제공의 취약성: 고난도 치료 욕구 (욕창, 당뇨, 경관관리 등) 많지만 상담 위주의 서비스 제공됨 - 중증노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미제공	- 건보의 사정 능력의 한계: 짧은 교육시간, 욕구 사정 미비로 제대로 된 서비스 이용 가이드의 한계 - 지나치게 가사수발중심의 질 낮은 사회적 돌봄 중심의 서비스 - 빈곤과 복지 부족으로 영양결핍 노인이 많음. 중복 문제: 운동량, 독거, 노인부부가구 -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의 부족 문제
4. (요양)병원 입소 노인	- 부적절한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요양원 이용자 - 노인성 질환 담당전문 의사의 부족으로 비전문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다수 - 간병인력의 낮은 서비스 질과 비용 부담	의료기관 재가간호 간호사제도의 비활성화: 병원에서 퇴원 후에 지속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의 필요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 공급	

연구결과2: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1. 의료, 보건, 복지의 연계의 필요성 인식

- 서구-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서비스 통합(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care)'
 으로 AIP 적극 유도함
 -> 의료비 절감과 노인 건강 증대
-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 내'에서의 기본 연계도
 매우 취약
 - 의료: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역할 불분명과 경쟁적인 병,의원들
 - 보건: 3대 재가 간호서비스간 연계 취약
 - 복지: LTCI와 등급외자 서비스 연계 취약

연구결과2: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 의료와 보건, 복지의 `영역 간의 연계`도 역시 취약
 - 민간 중심 의료기관과 공공중심의 보건소 등의 보건기관과의 연계 한계(인력, 예산부족)
 -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예방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재가노인센터 등의 보건과 복지 영역의 지역단위의 연계도 어려움
-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연계의 취약성으로 인한 결과
 - 비효율적 자원 배분, 서비스 중복이나 미이용 문제 발생
 - AIP의 제한과 병원과 요양원 입소 등의 시설화의 원인

OECD 주요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이용도

국가	입원(일수)			외래(방문횟수)		
	1990	2000	2014	1990	2000	2014
일본	50.5	39.1	29.9	13.8	14.5	12.8('13)
한국	-	<u>12.6('99)</u>	<u>16.5</u>	-	<u>8.8</u>	<u>14.9</u>
독일	16.7	11.9	9	5.3('91)	7.7	9.9
덴마크	8.2	6.2	4.3('13)	3.7	4.2	4.5
스웨덴	18	7.1	6.1	-	2.9('01)	2.9
영국	-	10.7	7.7	6.1	5.3	5.0('09)
미국	9.1	6.8	6.2	3.3('95)	3.7	4.0
캐나다	-	-	-	6.7	7.4	7.6('13)
OECD	15.5	11.6	10.5	6.4	6.5	6.8

연구결과2: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2.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개혁 방향

- 보건의료복지의 '파트너십'을 노인 복지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 노인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체계화 하도록 지역 주치의 제도 도입 등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
- 복지의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들을 통합을 비롯한 전달체계 강화 등

연구결과2: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3. 재가와 지역기반 서비스의 확대와

인력의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가사수발 중심의 '사회적 돌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의료 왕진제도 사실상 부재, 3대 방문 간호서비스의 낮은 비율
- 의료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 차원에서 주치의와 왕진 제도 도입
- 방문간호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
: 의사영역 확대, home nursing, 재택입원서비스(일본)
-> 서비스 질 제고

연구결과2: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3. 재가와 지역기반 서비스의 확대와 인력의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재가서비스 다각화
: 영양, 재활, 재기능화(Reablement) 도입 검토
- 지역기반 서비스(**community-based services**)를
확대 개발
: 이동지원서비스 개발,
돌봄서비스 + 지역 사회참여 서비스 제공
- 인력양성과 수급의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
: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필수, 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 필요,
서비스 질 제고의 측면 중요(양성)

연구결과2: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4. 지방정부의 역할의 강화와 지역사회보호 시스템 구축

- 노인의 AIP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
시스템 구축 중요
: 중앙정부 지시 이행의 수동적인 지방정부
-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도 일종의 '**사회서비스**'로
고유의 성격상 '**공공의 역할과 개입**'이 매우 중요함

연구결과2: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4. 지방정부의 역할의 강화와 지역사회보호 시스템 구축

- 지방정부의 핵심주체로서 역할 강화**
 : 서비스 수요 공급 관리, 시장화된 공급자들의 시장 진입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공공에 기반한 공급자의 확충
 (공공 의료기관 수-5.5%, 장기요양기관- 1.2%), 서비스 질 제고, 의료보장복지 서비스의 연계, 조정, 의뢰 등의 콘트롤 타워 역할
- 예산과 인력, 권한의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
 : 실질적인 분권화 필요
- 중장기적인 '지역사회보호 시스템 청사진' 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내용

의료 양극화 해소	-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하여 지역별 치료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 -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은 물론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공공·민간병원의 적정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 효율화 추진 -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 부족한 의료 인력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외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 - 취약지역 근무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하고, 공공의료인력에 대해 교육 단계부터의 국가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근무 의무제강화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제정
--------------------------	--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내용

의료 양극화 해소	-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강화 :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 : 의원·병원간, 원·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네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 -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 환수강화 : 건강보험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사람 (사무장)에 대한 환수·몰수·형사 처벌 적용강화 -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 동네 병·의원, 약국이용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면허체계 재정비 추진
--------------------------	---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내용

의료영리화 막고, 공공성 강화	-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내에서 경영 효율화 추진 :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 약국 허용 반대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 체계 구축
-------------------------------------	--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내용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소득분위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 : 비보험진료를 급여화하여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달성 - 고가의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적용을 대폭 확대 :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환자 안전 강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의무화 및 민간병원 확대 지원 :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 간호 인력 확충방안 다양화 및 재취업 활성화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 입원환자 고액 외래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치과·한의학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구강검진항목 개선 : 생애주기별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 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40세이상 5년 마다 '맞춤형건강검진' 시행
--------------------	--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내용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 병원-요양시설-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모든 공공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 절감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제도화 및 본인 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을 통한 서민의료비 부담 대폭 절감 - 노인부부(단독세대)까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 단계적 확대
국가치매 책임제 시행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발견, 의료·복지·돌봄 요양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치매안심병원설립,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 지정하여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적용, 치매환자진단, 치료, 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 부담 완화 - 치매환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 단기·주야간보호시설 등 확충 - 치매환자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적용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증진 사업 확대	- 도시보건지소 및 지역사회 보건 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확충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 '찾아가는돌봄지센터' 확대 및 복지 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복지인프라 강화 : 사례발굴 및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돌봄지센터' 확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 지역 복지 인력 확충 - 담배세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 건강사업에 적극 활용 - 담배세 인상분 중 개별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금연사업 및 근로자·학생·교직원·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 투자
--	---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내용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를 국가가 직접 제공	- 보육, 장기요양·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 국민연금공공 투자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민간시설의 매입 및 장기임대를 중심으로 국공립시설 확충 :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적극 투자 유도 -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 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에 배치 : 공단은 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 및 자격 관리, 일선 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 평가 관리 등 역할 담당 - 민간서비스 제공시설 지원 및 운영도 국공립 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을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상향
--	--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내용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발 -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 공간 확대 - 고령친화적 실버관광 위한 상품 개발 지원
주거지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13만호이상공급) 중 어르신 가구용 주택 할당 -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한(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지원 주택 확대 - 홀몸 어르신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홀몸노인안전센서' 설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분권을 실현	-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 조직권 확보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 확대 추진 - 개별 단위 사무가 아닌 기능 중심의 사무발굴 및 이양 추진 -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 제도 마련 - 지방의원 입법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내용

지방의 재정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자주 자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이양을 기조로 한 국세-지방세 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 - 지방 소비세의 규모를 확대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 - 지방세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의 현실화 등 지방세제 개편 - 이전자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 지방교부세를 상향 및 교부세제도 개선 - 지방이양, 통폐합 등 국고보조 사업 정비 - 실질적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납 징수율제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 자주 노력 강화 - 축제예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추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부하는 경우 세금 공제
---	---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요약

- 첫째, 의료, 보건, 복지영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폭 확충 방침
 - 1) 25개 취약 진료지역에 300병상 이상의 '지역별 거점 종합병원' 확충, 보건의료 인력과 응급 및 중환자 서비스의 확충 지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공공적인 업무 적자 지원, 치매안심병원 설립
 - 2) 방문보건사업과 도시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 확대
 - 3) 국공립의 장기요양 제공기관 확충,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서 산하에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대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요약

- 둘째, 의료, 보건, 복지 인력의 확충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채용 확대,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의 확대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등의 지역복지 인력의 채용 확대
- 셋째, 서비스 비용 감축 지원
: 의료비용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 100만원,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 진단, 치료, 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 완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문재인 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공약의 요약

- 넷째,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을 노인부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40세 이상은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 다섯째, 지방분권화를 위해 세제개혁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 예산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자율적인 업무의 권한을 확대

문재인 정부 공약의 평가

- 의료와 보건, 복지 영역에서의 공공의 역할이 취약하므로 발생하는 각종의 구조적인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특히, 공공 제공기관과 인력의 확대, 1차 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등의 기능 개편 시도, 보건소의 방문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건강검진의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지방 분권화의 추진 등의 거시적인 정책의 시도는 주목할 만한 변화
- 그러나, 의료분야에 공약이 치우쳐져 있음.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노인을 병원에 입소시키는 방식으로 탈시설화에 역행하고 치매노인의 과잉의료가 우려됨. 오히려 경증과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한 예방과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유도해야
- 또한, 공공 인프라와 인력을 확대하면서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의 모델 마련 시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보건, 복지 분야의 개선방향과 공약의 반영 여부

개선방향	주요내용	공약 반영여부
1. 의료·보건·복지 영역의 연계의 필요성 인식	-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접근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건·복지 영역간 연계 필요	X
2. 의료·보건·복지 영역 개혁방향	- 의료·보건·복지의 파트너십을 노인복지의 중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할 필요	X
	- 의료기관과 보건의 지역차원의 예방시스템 강화: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O
	-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	O
	- 66세 이후에도 체계적인 검진 강화	O
	- 장기요양과 등급외자 서비스간 연계 강화, 등급외자 서비스 통합, 예방의 개념 협의 필요	X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보건, 복지 분야의 개선방향과 공약의 반영 여부

개선방향	주요내용	공약 반영여부
3. 재가와 지역기반 서비스의 확대와 인력의 발전 방향 모색	- 지역사회차원에서 주치의와 왕진 제도 도입	X
	- 방문 왕진의료, 투약관리, 호스피스급여 도입	X
	- 방문간호서비스의 확대 : 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자 확대	O
	- 간호사를 통한 다양한 재가요양서비스 도입 검토 필요	X
	- 재활서비스와 영양서비스의 체계적인 개발 및 도입 필요	X
	- 지역기반서비스(ex. 이동지원과 사회참여)의 확대 개발과 기존 재가서비스와 함께 제공	△
	- 보건의료복지 인력의 중장기적인 확충 및 교육방안 필요 (가정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보호사 등)	O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보건, 복지 분야의 개선방향과 공약의 반영 여부

개선방향	주요내용	공약 반영여부
4.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와 지역사회보호 시스템 구축	- 지방정부가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핵심주체인 콘트롤 타워로 역할	△
	- 바람직한 공공의 서비스 모델 개발	X
	- 공공 제공기관 확충	0
	- 제공기관에 대한 시장 진입과 사후적인 관리 감독 강화	X
	-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의 확대 (예, 인증제)	X
	-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의 이양	0
	- 재정자립도 취약 지자체에 대한 지원	0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 표 3]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김 재 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2017. 06. 29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T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NTENTS

- 01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안
- 02 고소득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03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 04 탈루소득 과세 강화
- 05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KIT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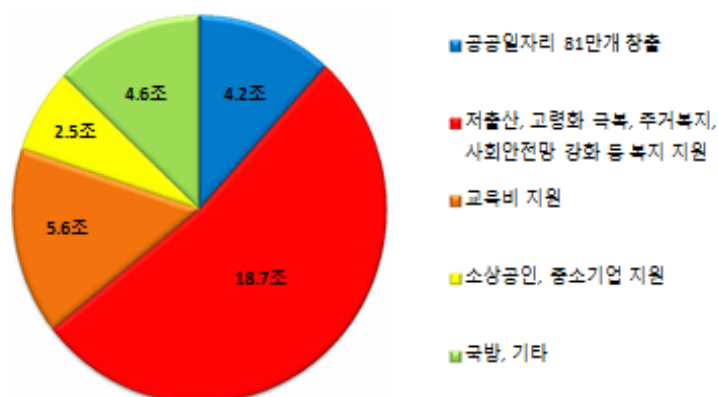
소요자원과 자원조달 방안



KIP 한국포세계연구원

소요자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KIP 한국포세계연구원 | 4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국가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공무원 17.4만명 / 공공부문 서비스 34만명 /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30만명
-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 완화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노후소득보장 강화, 질병으로 인한 노후파산 예방
-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문제 해결과 의료 양극화 해소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교육비 지원

-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
- 방과후, 방학중 방치되는 아동과 청소년이 없도록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 고교 학점제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축소
-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국방·기타

- 북핵 대응 조기 전력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 국방개혁 추진과 함께 방위산업을 육성
-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
-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
-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의 현장대응능력 선진화
-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과 맞춤형 스마트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

KIP 한국포세텍연구원 | 9

소요재원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소요재원 비교

- ◆ 복지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5년간 43.2조(연평균 8.64조)의 소요재원이 증가함

소요재원 비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5년간 178조(연평균 35.6조)		5년간 134.8조(연평균 26.96조)	
일자리 창출	21조	경제부흥	33.9조
산업육성	12.5조	국민행복	79.3조
사회복지	93.5조	문화융성	6.7조
교육비	28조	평화통일	17.6조
국방, 기타	23조		

KIP 한국포세텍연구원 | 10

재원조달 방안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66조원 조달

재정·세입개혁 연차별 계획

(단위: 조원)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1. 재정개혁	112	19.6	21.1	22.5	23.7	25.1
① 재정지출 절감	92	16.2	17.3	18.4	19.3	20.6
② 기금 여유재원	15	2.9	3.0	3.1	3.0	3.0
③ 이차보전 전환	5	0.5	0.8	1.0	1.2	1.5
2. 세입개혁	66	8	15.5	13.7	14.3	14.5
	29.5	5.9	5.9	5.9	5.9	5.9
③ 세외수입 확대	5	0.7	0.9	1.1	1.1	1.2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11

재원조달 방안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 비교

◆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여 세입을 5년간 18조원 더 확보하고, 세출을 27.9조원 더 절감하여 재원조달

재원조달 방안 비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세입확충	66조	세입확충	48조
세법개정	31.5조	비과세·감면 정비	18조
달부 세금 과세	29.5조	지하경제양성화	27.2조
세외수입 확대	5조	금융소득 과세강화	2.9조
세출절감	112조	세출절감	84.1조
재정지출 절감	92조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15조		
이자보전 전환	5조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12

문재인 정부 공약 개요

4대 비전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2대 약속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1. 간의 불공정 간접 규제
2. 불리경쟁승계, 항재경쟁, 부당특혜 근절
3. 소비자 피해구제 정상화
4.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5. 하도급 근로자 임금채권 해결
6. 공정한 근로여건 확보
7.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8.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9. 자본시장 고환율의 처벌 강화
10. 주주권 행사 강화도 견제한 시장질서 확립

11. 조세정의 실현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13

2 고소득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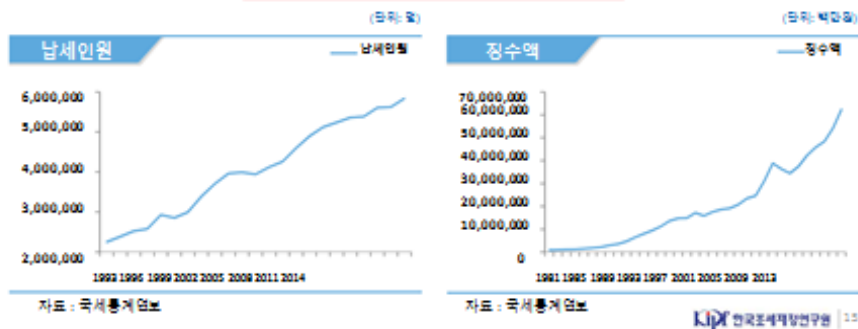
0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 소득세 납세인원과 징수액

납세인원 - 1993년 3,165,119명이던 납세자는 2015년 6,187,254명으로 1.95배 증가하였음

징수액 - 1981년 8,862억이던 소득세 징수액은 2015년 62조로 70배 증가하였음
- 부가가치세를 제치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 소득세 납세인원과 징수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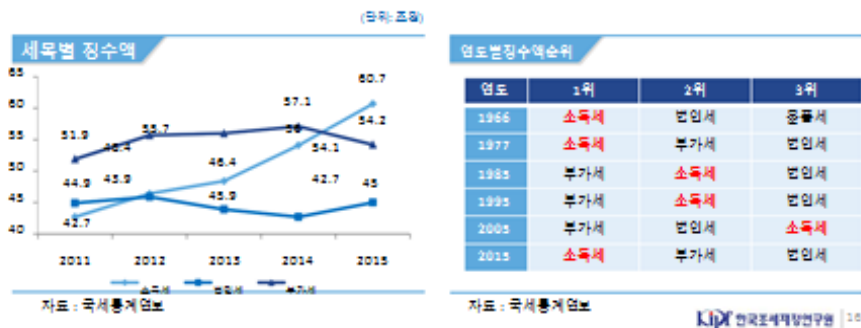
0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나. 소득세의 비중

◆ 2015년 소득세는 60.7조원, 세수에서 27.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명목임금의 상승, 취업자 수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기인하여 소득세 징수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소득세 징수액 추이 ◀



0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다. 소득세 세율 연혁

◆ 1995년까지 45%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까지 하락하였다가 2017년 40%까지 상승함

소득세 세율 연혁

95~2001	2002~04	2005~07	2008	2009	2010	2012	2014	2017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6단계
-1,000 10%	-1,000 9%	-1,000 8%	-1,200 8%	-1,200 6%	-1,200 6%	-1,200 6%	-1,200 6%	-1,200 6%
1,000~4,000 20%	1,000~4,000 18%	1,000~4,000 17%	1,200~4,600 17%	1,200~4,600 16%	1,200~4,600 15%	1,200~4,600 15%	1,200~4,600 15%	1,200~4,600 15%
4,000~8,000 30%	4,000~8,000 27%	4,000~8,000 26%	4,600~8,800 26%	4,600~8,800 25%	4,600~8,800 24%	4,600~8,800 24%	4,600~8,800 24%	4,600~8,800 24%
8,000~ 40%	8,000~ 36%	8,000~ 35%	8,800~ 35%	8,800~ 35%	8,800~ 35%	8,800~20,000 35%	8,800~15,000 35%	8,800~15,000 35%
						20,000~ 38%	15,000~ 38%	15,000~30,000 38%
								30,000~ 40%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17

0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

● 전체 근로자의 0.1%인 19,683명, 종합소득자의 0.7%인 44,860명이 해당됨

현재와 인상 후 소득세율

현재		인상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3억원 초과	42%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18

02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현황

- ◆ 2015년에 4,830억의 신고세액 공제가 이루어졌는데, 상속이나 증여재산 규모가 큰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공제가 이루어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액			(단위: 백만원)		
	상속세	증여세			
2011년	147,852	174,987			
2012년	184,969	179,320			
2013년	170,741	178,588			
2014년	178,865	208,873			
2015년	234,529	248,531			

자료: 국세통계연보

규모별 증여재산 (2015년)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규모	공제액	증여재산 규모	공제액		
1억 이하	1	0.1억 이하	497		
1억 ~ 3억	28	0.1억 ~ 0.5억	2,593		
3억 ~ 5억	90	0.5억 ~ 1억	8,674		
5억 ~ 10억	2,436	1억 ~ 3억	51,054		
10억 ~ 20억	15,676	3억 ~ 5억	25,350		
20억 ~ 30억	19,165	5억 ~ 10억	58,413		
30억 ~ 50억	28,324	10억 ~ 20억	51,867		
50억 ~ 100억	54,115	20억 ~ 30억	18,226		
100억 ~ 300억	72,324	30억 ~ 50억	15,188		
300억 초과	62,560	50억 초과	72,659		

자료: 국세통계연보

KDI 한국경제연구원 1

자료: 국세통계연보

자료: 국세통계연보

KIPF 한국포세채무연구원 | 19

02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 ◆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던 비율을 축소함

요건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016년 이전	-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공제율 개정	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
2017년	-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함
공제율 축소	공제율을 7%에서 3%로 축소
축소 후	-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함

KIPF 한국포세채무연구원 | 20

03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가.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현황

◆ 2015년에 22,239건의 주식 양도가 발생하였고 양도차익은 7,919억이었음

- 양도가액 규모가 커질수록 건수는 적어지지만 건당 양도차익이 크게 상승함

양도가액 규모별
(2015년)

(단위: 건, 백만원)

양도가액 규모	자상건수	양도차익
0.5억 이하	11,717	44,340
0.5억 ~ 1억	3,332	41,309
1억 ~ 2억	2,037	55,395
2억 ~ 3억	1,265	43,339
3억 ~ 5억	1,117	52,397
5억 ~ 10억	905	75,927
10억 ~ 20억	301	110,604
20억 ~ 30억	145	73,285
30억 ~ 50억	99	73,342
50억 ~ 100억	65	70,436
100억 초과	47	130,770

자료 : 국세통계연보

적용 세율별
(2015년)

(단위: 건, 백만원)

비상장주식	자상건수	양도차익
중소기업(10%)	1,489	197,056
비중소기업(20%)	20,160	494,351
비중소기업(30%)	3	522

상장주식	자상건수	양도차익
중소기업(10%)	159	35,313
비중소기업(20%)	216	32,170
비중소기업(30%)	52	5,607

자료 : 국세통계연보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21

03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나.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법 및 과세 강화

◆ 현재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장외 거래 주식, 비상장주식에만 부과됨

-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거주자	개인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20
			그 외 주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30
		소액 주주	상장주식 장내거래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		중소기업주식	10
		그 외 주식	20	
	법인	모든 주식		법인세

* 대주주 요건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22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가. 금융소득 과세 연혁

- ◆ 96년 시행 후 IMF 금융위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보함
- ◆ 13년 이후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짐
- ◆ 02년 부부합산과세가 위험판결을 받아 부부별산과세함

▶ 금융소득 과세 연혁 ◀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8	9~11	'12	'13	'17		
종합과세		시행		유보			시행										
세율	기본	10~40%					9~38%			8~35	6~35	6~38%		6~40			
	일천	15%		22%		20%		15%			14%						
기준금액		4천만원		유보			4천만원								2천만원		
합산여부		부부합산과세						부부별산과세									

KIP 한국포세재정연구원 | 23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나. 금융소득 과세 현황

- ◆ 201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원은 11만 1천명이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13조 7천억원임
- ◆ 13년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진 이후 종합과세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

과세 현황

(단위: 천명, 천억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51.2	55.7	157.6	115.1	111.0
금액	102.1	106.5	125.6	115.0	156.5

자료: 국세통계연보

금융소득 규모별 (2015년)

(단위: 천, 백만원)

금융소득 규모	신고인원	금융소득
0.2억 이하	1,516	4,529
0.2억 ~ 0.3억	40,925	951,515
0.3억 ~ 0.4억	16,075	622,585
0.4억 ~ 0.5억	17,172	655,860
0.5억 ~ 0.6억	9,105	627,727
0.6억 ~ 0.8억	2,455	206,470
0.8억 ~ 1억	2,461	251,070
1억 ~ 2억	9,890	1,561,215
2억 ~ 3억	3,315	806,142
3억 ~ 5억	2,626	1,005,866
5억 초과	5,676	6,972,825

자료: 국세통계연보

KIP 한국포세재정연구원 | 24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함
 -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세율(6~40%)이 아닌 원천징수세율(14%)로 분리과세 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기준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기준금액
인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인하 후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

3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01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가. 법인세 최저한세율 연혁

- ◆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 이하의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낮아지고 과표가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옴
 - 일반 법인세율과 비교하였을 때, 최저세율은 3%, 최고세율은 5% 차이가 있음

▶ 법인세 최저한세율 연혁 ◀

연도		'05	'08	'09	'10	'13	'14
중소기업		10%	8%	8%	7%	7%	7%
일반기업	100억 이하				10%	10%	10%
	100~1,000억	13%	13%	11%	11%	12%	12%
	1,000억 초과	15%	15%	14%	14%	16%	17%
일반 법인세율		15~25%	11~25%	11~22%	10~22%	10~22%	10~22%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7

01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 ◆ 최저한세란 과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수입을 위해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아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로, 공제나 감면 후의 법인세와 최저한세를 적용한 법인세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함
 - 과세표준 1천억 이상의 초고소득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실효세율**을 인상함

▶ 현재와 인상 후 최저한세율 ◀

구분	과세표준	현재	인상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9%
	100억원 이하	10%	10%
	1천억 이하	12%	12%
	1천억 초과	17%	19%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9

01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나. 최저한세율 적용 현황

- ◆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중소기업 9,929개(전체 중소기업의 2.07%), 일반법인 735개(전체 일반법인의 0.65%)로 1,000억을 초과하여 1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받는 일반법인은 10개임

최저한세 적용 기업

(단위: 개)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2011	11,513	837
2012	8,657	507
2013	10,673	743
2014	10,577	760
2015	9,929 (2.07%)	735 (0.65%)

* ()안은 증 신고법인 대비 비율

자료: 국세통계연보

과세표준 규모별
(2015년)

(단위: 개)

과세표준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1억 이하	5,830	209
1억 ~ 2억	2,195	91
2억 ~ 5억	1,557	97
5억 ~ 10억	334	61
10억 ~ 20억	134	72
20억 ~ 50억	55	75
50억 ~ 100억	17	55
100억 ~ 200억	3	30
200억 ~ 500억	1	22
500억 ~ 1,000억	-	10
1,000억 ~ 5,000억	-	6
5,000억 초과	-	4

자료: 국세통계연보

KIP 한국포세재정연구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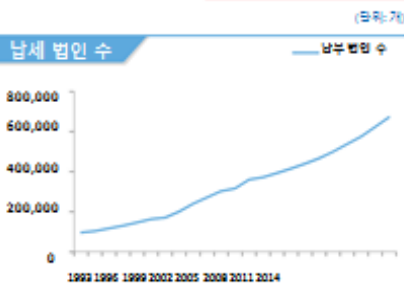
02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가. 법인세 납세 법인 수와 징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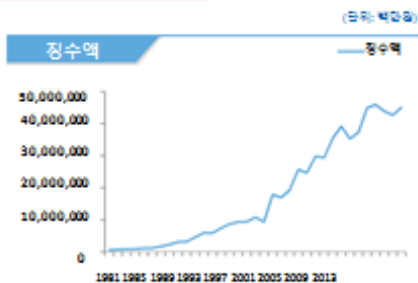
납세 법인 수 - 1993년 96,629개이던 법인세 납세 법인은 2015년 673,374개로 7배 가량 증가하였음

징수액 - 1981년 5,940억이던 법인세 징수액은 2015년 45조로 76배 증가하였음
- 소득세와 부가세에 이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번째로 높음

▶ 법인세 납세 법인 수와 징수액 추이



자료: 국세통계연보



자료: 국세통계연보

KIP 한국포세재정연구원 20

02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나. 법인세율 추이

◆ 1994년 이후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됨

● 문민정부(34%→28%), DJ정부(28%→27%), 참여정부(27%→25%), MB정부(25%→22%)

▶ 법인세율 추이 ◀

과표	6공	문민정부				DJ정부	참여정부	MB정부			
	'94	'95	'96	'97~'02	'03~'05	'06~'08		'09	'10	'11~'12	'13~
~1억	20%	18%	18%	16%	15%	13%		11%	11%	10%	10%
1~2억											
2~200억	34%	32%	30%	28%	27%	25%		25%	22%	22%	20%
200억~											22%

KIPF 한국포세텍연구원 | 21

02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다. 실효세율 추이

◆ 법인세 실효세율의 추이를 보면 비과세·감면이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이 상승함

●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된 이유도 있지만, 대기업 중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평균보다도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음

▶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

(단위: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체기업	16.6	16.6	16.8	16.0	16.0	16.1	16.6
대기업	17.7	17.6	17.8	17.1	17.3	17.3	18.0
상호출자제한기업	16.0	16.3	16.2	15.8	16.2	16.0	17.1
중견기업					16.5	17.0	17.5
중소기업	13.1	13.2	13.3	12.3	12.5	12.6	12.7

KIPF 한국포세텍연구원 | 22

02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 과세표준 200억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상향
-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고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세부담 강화

▶ 현재와 인상 후 법인세율 ◀

과세구분기준	현재	인상 후
2억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 초과	과세표준의 100분의 22	과세표준의 100분의 25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 23

03 비과세·감면 축소

가. 국세감면 추이

- ◆ 감면액은 14년 34.3조원(14.3%), 15년 35.6조원(14.2%), 16년 35.3조원(13.7%) 규모임
-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며 비중을 줄여가고 있음
- 15년은 근로장려금의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증가, 16년은 대기업의 공제 축소로 인해 감소함

▶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

(단위: 억 원, %)

구분	2014년(실적)	2015년(추정)	2016년(추정)
국세감면액(A)	343,383	356,636	353,325
국세수입증액(B)	2,035,198	2,157,346	2,231,383
국세감면율(A/(A+B))	14.3%	14.2%	13.7%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8%	14.7%	14.8%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 24

03 비과세·감면 축소

나.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 ◆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34%**,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중 **대기업이 38%**를 차지함
- 09년 이후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며 비중을 줄여가고 있음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실적)		2015년 (추정)		2016년 (추정)	
			비중		비중		비중
개인	중·저소득자	148,586	64.3	166,294	66.0	165,622	66.0
	고소득자	82,214	33.3	85,844	34.0	85,489	34.0
	계	231,800	100	232,138	100	231,112	100
기업	중소기업	57,661	55.3	55,655	56.1	57,326	59.3
	중견기업	2,607	2.5	2,606	2.6	2,535	2.6
	상호출자제한	27,318	26.2	26,024	26.2	23,278	24.1
	기타기업	16,707	16.0	15,017	15.1	13,512	14.0
	계	104,293	100	99,302	100	96,651	100
구분합산		7,290	-	3,216	-	3,562	-
총계		343,393		356,656		353,325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 25

03 비과세·감면 축소

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연혁

-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과세·감면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개정내용이 2016년 시행되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2015년 8,938억에서 2016년 4,415억으로 4,523억원 감소함

2014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기업 당기분 기본공제를 인하 (3~4% → 2~3%)
2015년 개정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조정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100% → 80%)
2016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기업 공제를 인하 (당기분: 2~3% → 1~3%, 증가분: 40% → 30%)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조정 (3/5/7% → 1/3/6%)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 26

03 비과세·감면 축소

라.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

-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효율성을 제고
 -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축소 및 정비
 -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세액공제 별 공제액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4년(실적)	2015년(추정)	2016년(추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7,860 (8.11%)	28,188 (7.90%)	28,489 (8.07%)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1,349 (3.31%)	8,938 (2.51%)	4,415 (1.2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3,782 (1.10%)	3,928 (1.10%)	3,415 (0.97%)

* () 안은 총 조세지출액 대비 비율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학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합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27

03 비과세·감면 축소

-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효율성을 제고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 목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 연구개발비 : 인건비(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재료비 등) - 인력개발비 : 위탁교육훈련비(연구전담요원 등)
공제율	- 당기 발생분 :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 * 1~3%(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 전기 초과분 : 연구·인력개발비 초과액 *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기본공제 폐지	현재 : 기본공제 1% +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 (한도 3%) 개정 :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 (한도 3%)
폐지 후	- 당기 발생분 :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 * 0~3%(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 전기 초과분 : 연구·인력개발비 초과액 *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28

03 비과세·감면 축소

-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효율성을 제고
-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제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 감면업종 : 소비서비스업 종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적격사업용 자산 : 내국인이 새로 취득한 업종별 사업용 자산과 금융 사업용 자산

공제율

- 기본공제율 : 수도권(일반0%, 중견1%, 중소기업3%), 수도권밖(일반0%, 중견2%, 중소기업3%)
- 추가공제율 : 수도권(일반3%, 중견5%, 중소기업6%), 수도권밖(일반4%, 중견6%, 중소기업7%)

2017년 일몰
종료 예정

폐지 후

폐지 후 투자세액공제 제도, 고용지원세제와 연계하여 재설계

KIP 한국포세채무연구원 | 39

03 비과세·감면 축소

-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효율성을 제고
- 생산성 향상, 안전 관리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의 목적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 투자금액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10%)

공제율
하향 조정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1~4% 하향 조정함

인하 후

- 투자금액 ×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KIP 한국포세채무연구원 | 40

4 탈루소득 과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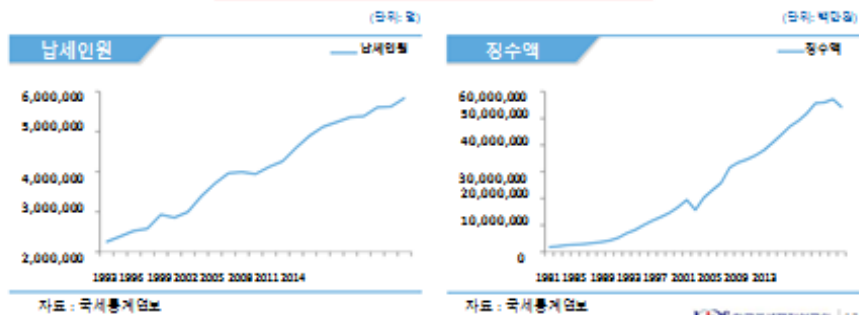
KIP 한국포세개발연구원

01 부가세 징수 방식 개선

가. 부가가치세 납세인원과 징수액

- 납세인원**
 - 1993년 2,253,105명이던 납세자는 2015년 5,837,775명으로 2.6배 증가하였음
 - 연평균 4.4%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징수액**
 - 1981년 1.8조이던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15년 54조로 30배 증가하였음
 - 연평균 10.5%씩 큰 폭으로 증가해왔음

▶ 부가가치세 납세인원과 징수액 추이 ◀



KIP 한국포세개발연구원 | 42

01 부가세 징수 방식 개선

나. VAT GAP

◆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과의 차이

- 조세범칙, 체납, 탈세·지하경제·조세회피·오류·법해석 차이 등으로 구성됨

▶ 2011년 한국의 VAT GAP ◀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기준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631,471
(-)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 519,069
부가가치세 APG	112,402 (17.8%)
· 결손, 체납액	34,179
· 부가가치세 탈루 등 조세회피	78,223

KI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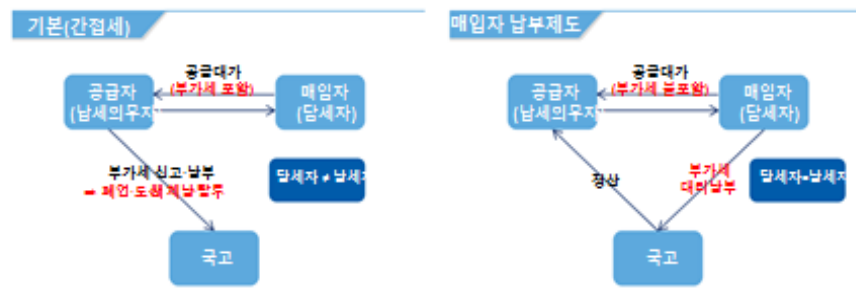
01 부가세 징수 방식 개선

다.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부여하여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함

- 한국에서는 금, 동, 철 스크랩에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매입자 납부제도 ◀



KI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4

01 부가세 징수 방식 개선

라.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 ◆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공급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에 부여하여 체납과 탈루를 최소화
 - 여신전문금융사는 매입자로부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를 수령하여 국세청에 부가세를 대리 납부한 뒤, 가맹점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함
 - 민간 소비에서 신용카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55%로 B2C 거래에서 부가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납과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음
- ◆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사에 의한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되면 세수증대효과, 징세비용 절감, 부당한금 방지의 효과가 기대됨

0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기준금액 하향

- ◆ 해외에 은닉된 금융재산을 탈세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



03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 2015년 체납액은 3조 7,832억으로 1인 평균 17억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법인 최고액 490억임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자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

* ('04) 2년 경과 10억원 이상 → ('10) 2년 경과 7억원 이상 → ('12) 1년 경과 5억원 이상

공개항목 -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 상습·고액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명단공개	인원	1,313	7,213	2,998	2,398	2,226
	체납액	32,774	110,777	47,913	41,854	37,832
납부금액		577	723	899	1,178	1,026

KIPF 한국포세텍연구원 47

5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KIPF 한국포세텍연구원

01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황

가. 근로장려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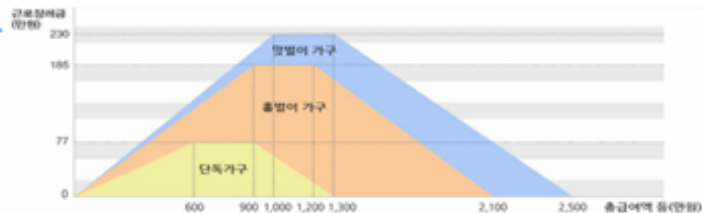
근로장려금

-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 가구 구성원과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서
-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지급요건

- (가구요건) ①배우자가있거나②만18세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③신청자가만40세이상
- (소득요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지급금액



KIP 한국포세텍연구원 49

01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황

나.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

신청·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신청가구	지급가구	지급액
2008	723,937	590,720	453,731
2009	876,634	566,080	436,903
2010	866,816	522,096	402,003
2011	930,232	752,049	614,021
2012	1,020,067	763,397	561,761
2013	1,080,403	846,016	774,492
2014	1,638,659	1,261,856	1,056,962
2015	1,695,491	1,378,363	1,028,049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2015년)

(단위: 백만원)

가구유형	가구수	금액
단독가구	417,954	155,144
홑벌이 가구	826,590	741,254
맞벌이 가구	132,379	131,651

(단위: 백만원)

근로형태	가구수	금액
상용	393,382	315,821
일용	402,028	240,717
상용+일용	103,170	89,336
사업	433,923	362,646
기타	24,445	19,507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KIP 한국포세텍연구원 50

01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황

다.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황

◆ 근로장려금의 수급기준과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황 ◀

지급요구조건	현재	인상 후
재산기준	1억 4천만원	2억
소득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 (홀벌이가구) 2,100만원 - (맞벌이가구) 2,500만원	- (단독가구) 1,700만원 - (홀벌이가구) 2,500만원 - (맞벌이가구) 3,000만원
지급금액	가구와 소득금액별 지급	지역화폐 50만원 추가지급

KIP 한국포세텍연구원 | 21

02 중산층·서민 주거 비용 세제 지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및 한도 상향

◆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비용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함

▶ 월세 세액공제 ◀

요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25.75평)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율	- 월세 지급액의 100분의 10
지원 요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한도	- 월세액 750만원
공제 확대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원으로 상향, 월세한도를 900만원으로 인상
확대 후	- 지원요건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한도 : 월세액 900만원

KIP 한국포세텍연구원 | 22

부 록

- ◆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관련 기사
- ◆ 본 연구회 소개
- ◆ 공지사항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26차〉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김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5차〉 2016.12.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발표자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도형(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발표자 : 고재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영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2 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동주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4차〉 2016.11.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제발표 : 성윤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경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옥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열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찬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병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혜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23차〉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토 론 자 :

1) 이진한 차장(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순돌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은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으로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기춘 실장(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22차〉 2016.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1: 박신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2: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은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21차> 2016.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발표자 :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 박인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20차>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김주섭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자 :

- 1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 김정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 3 :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 4 : 정양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 5 : 이수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옥주(본 연구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19차>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 론 자 :

1 : 김현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 이상철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 김경록 소장(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18차)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 고수석 연구위원(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 김은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 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 은성호 과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7차)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 최진봉(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 유근형기사(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범진 이사장(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차)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 양점도(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 2 : 구종회(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3 : 양성근(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4 : 권오영(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변호사)
- 5 :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축 사 :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남서울대학교)

15차〉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 1 : 박미숙(천안시 여성가족과장)
- 2 : 김태희(백석문화대 교수/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3 : 이명숙(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4 : 이은하(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장)

축 사 : 공정자 총장(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14차〉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발표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 론 자 :

- 1) 박병현 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이태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3) 서병수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국민연금공단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3차〉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발표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 론 자 :

- 1)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 3) 이창곤 소장(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4)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현대자동차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2차)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 1)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 2) 정은상 님(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 3)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4) 김동열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 5) 김명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 6)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본 연구회 운영위원)

후 원 : 국민건강보험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1차〉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
원확보 방안

주제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2)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홈페이지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0차〉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신인석 교수(중앙대 경영학과)
- 2) 이의영 교수(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윤중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성택 총장(그리스도대학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9차〉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4. 박기환 교수(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8차>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 2)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 3)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 4)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 5)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갯츠>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7차>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론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윤중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1부사회 : 박서영 교수(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사회 : 박기환 교수(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6차>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 김용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2) 이기영 단장(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3) 우재룡 소장(삼성생명은퇴연구소)
- 4) 최용민 님(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5차>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 론 자 :

1.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언론-mbc뉴스토론회 풀영상 및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4차>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발표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임순 교수(백석대)
2.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박순현 서기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홍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 · 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 성남시, S · 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3차>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주제 발표 : 정무성 원장

(前승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 론 자 :

1. 박헌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언론---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2차>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개최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발표 :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 론 자 :

- 1) 진석범 교수(동서울대학교)
- 2) 장향만 사무관(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 3) 이애련 교수(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 장윤영 도의원(한나라당)
- 5) 지관근 시의원(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1차>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 : 강욱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자 :

- 1)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2)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4) 정무성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본 연구회 언론기사〉



복지전문가들 나서서 대한민국 복지미래 고민한다.
23일 프레스센터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개최
등록 : 2017-02-22 17:14 |

23일 프레스센터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개최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대한민국의 복지 미래를 고민하는 특강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에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불법 수급자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다.

특강은 ‘한국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이라는 제하로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강의한 후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 미래와 과제’라는 강의를 할 계획이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만든다”고 관심을 부탁했다.
[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새 정부 복지정책 점검
‘새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방향 제안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7/06/18 [10:40]

[성남일보 = 김성은 기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새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방향 제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정부의 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후 김미혜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 복

지 체감도와 현실성', 전용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문재인 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재진 선임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의 조달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 후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맞춰 사회 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라임경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여성 인권 TV 모니터링 위원 모집
김성훈 기자 | 2017.05.12. 17:47:37

[프라임경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는 2017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대중매체 TV 남녀차별 개선활동을 위한 모니터 및 개선활동'을 위한 위원을 10명을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된 위원들은 대중매체 중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 높은 TV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여성상 △여성에 대한 비하와 상품화 △성적 대상화의 남녀차별의 장면과 말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맞닿고 있는 현실 속에 '가사분담' 세계 꼴찌 수준 한국 남성과 여성에게만 치중돼 있는 가사 분담 및 양육, 보육 등 남녀차별과 관련한 대중매체 역할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사람은 070-8793-5202로 문의, 궁금한 점이나 접수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된다.



“TV 남녀차별 해법 찾는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TV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 요원 모집

[성남일보 = 김성은 기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대중매체 TV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 및 개선활동’에 참여할 참가자를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모니터 요원 공개 모집은 TV 화면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여성상, 여성에 대한 비하와 상품화, 성적 대상화 등 남녀차별 장면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선진사회복지회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맞닥고 있는 현실 속에 ‘가사분담’ 세계 꼴찌 수준 한국남성과 여성에게만 치중되어 있는 가사 분담 및 양육, 보육 등 남녀차별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지상파 및 4개 종합편성, 3개 케이블 방송사의 드라마와 예능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대중대체 모니터링에 대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대표는 "TV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남녀평등을 위반하는 방송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갈등 조정 공익조정제도 만들자”

‘한국의 개조’ 세미나 / 감사원·법원·헌재 3심제 통해 관련 당사자 승복 유도해야

입력 : 2017-03-02 20:38:28 수정 : 2017-03-02 20:38:28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2일 “보수와 진보가 각각 성장과 분배 측면만 강조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허구”라면서 각종 사회 갈등을 조정할 공익조정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공익조정위제도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놓인 노동, 교육, 공공, 금융등의 개혁 방안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합의절차다. 감사원의 조정→공익조정 법원의 판결→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3심제를 통해 관련 당사자, 지역의 승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 전 원장은 이날 리더십 한림원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개조:균형의 길, 발전동력을 살려라’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보수의 성장 전략으로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진보의 분배 전략으로 공정성을 회복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그는 “대기업은 정경 유착과 내부자 거래, 일감 몰아주기,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편법 상속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대기업 주도의 성장 정책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진보 진영도 분배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다 국가가 파탄에 이른 남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원장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화하면서 300~4999인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낙삼 한양대 교수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4차 산업혁명이 밀려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적, 지역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그 일환으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개발, 이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제언했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

[한국NGO신문]김민정 기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제로 지난 2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특강을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선주자들은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보장을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근시적인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령 저 출산 고령화대책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우리 인체의 자동조절 균형이 건강을 유지하고 진화를 계속하는 것처럼 복지와 경제도 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효율을 이루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시대는 고용절벽과 성장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률을 더욱 초래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전달체계의 공공경직성, 기초보장의 부족, 자기성취감의 상실 등으로 복지제도의 자기조절기능이 상실로 이어 지기 때문인데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 하도록 제도적인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의 길>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성장후분배 모델로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왔고 국민연금의 과감한 개혁과 건강보험 안정적 정착,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정적자로 2045년 적자, 2063년 기금고갈 우려가 있지만 보험료를 9%에서 13%로의 인상은 시행착오적 발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부과대

상소득 상한액 '434만원'을 2배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3 - 4% 인상효과가 있게 되고 최저 연금과 최고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특강 개최

내외신문 17-02-24 14:11 | 최종업데이트 17-02-24 14:11

[내외신문=김윤진 기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제로 2월23일 오후2시30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특강을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선주자들은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보장을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근시적인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저 출산 고령화대책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우리 인체의 자동조절 균형이 건강을 유지하고 진화를 계속하는 것처럼 복지와 경제도 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효율을 이루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시대는 고용절벽과 성장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률을 더욱 초래 할 수도 있다. 전달체계의 공공경직성, 기초보장의 부족, 자기성취감의 상실 등으로 복지제도의 자기조절기능이 상실로 이어 지기 때문인데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 하도록 제도적인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의 길>'이 필요하다" 고 했다.

이어 김진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성장후분배 모델로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왔고 국민연금의 과감한 개혁과 건강보험 안정적 정착,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왔다고 평가 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정적자로 2045년 적자, 2063년 기금고갈 우려가 있지만 보험료율 9%에서 13%로의 인상은 시행착오적 발상일 수 있다.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 상한액 '434만원'을 2배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3 - 4% 인상효과가 있게 되고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복지연합신문**
Bokji News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복지사회의 미래 과제' 특강 개최"복지제도,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인 협치 필요"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02.24. 10:1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2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특강을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사진)은 인사말에서 "대선주자들은 표를 의식한 복지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복지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보장을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저출산 고령화대책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적 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사진)은 "우리 인체의 자동조절 균형이 건강을 유지하고 진화를 계속하는 것처럼 복지와 경제도 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효율을 이루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시대에는 고용절벽과 성장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률을 더욱 초래할 수도 있다. 전달체계의 공공경직성, 기초보장의 부족, 자기성취감의 상실 등으로 복지제도의 자기조절 기능이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의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특강을 맡은 김진수 교수(사진)는 "우리 나라는 선성장 후분배 모델로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왔고 국민 연금의 과감한 개혁과 건강보험 안정적 정착,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정적자로 2045년 적자, 2063년 기금고갈 우려가 있지만 보험료율 9%에서 13%로의 인상은 시행착오적 발상일 수 있다.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 상한액 '434만원'을 2배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3~4% 인상효과가 있게 되고,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경인일보

[특별인터뷰]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장 "복지는 단순히 퍼주는 게 아냐...통일시대 대비하는 전략 필요"

박정배 기자 | 승인 2017.03.01. 23:15



올해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 중 하나는 복지다. 대권 주자들 모두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진영 논리로 비약돼 정쟁(政爭)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정쟁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난 2011년에 벌어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다. 당시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필요 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못하면서 오 시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또 대통령직 상실의 위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언급한 ‘증세 없는 복지’도 지금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복지 비전으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담배세, 주류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명제를 남기는 데 그쳤다.

이처럼 복지의 시행 방법론은 정권이 바뀌면서 선거 표심몰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복지라는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분배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진보 진영의 공약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강력하게 ‘복지국가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를 단순히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이들도 있다. 복지를 시행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선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인매일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보다 나은 복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을 만났다.

지난 2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 “원래朴 대통령 지지했지만…‘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쉽게 설명하자면 복지의 영역이 진보 진영에 매몰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이들의 연구 모임이다. 합리적인 보수의 논리를 분배 과정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복지를 공부하고 실제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사회가 복지를 너무 이분법적인 논리로 나눈다는 것”이라며 “복지를 이념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인 이 회장은 당초 정치적인 노선은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인물이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회장은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우리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복지라는 명목 아래 자녀 세대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대놓고 증세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담뱃값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늘렸다”며 “이제는 증세만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증세의 방법에 대해 부자 감세 철폐, 법인세 증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기업 순위에 따라 법인세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숙 회장이 지난해 12월 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우리가 자원이 있나 인구가 적나…북유럽 방식은 그야말로 벤치마킹까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표적인 복지 국가로 자리매김한 나라는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이다. 이미 각종 서적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들 국가를 배우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보는 시각은 세간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회장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을 시민단체역량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다녀왔는데 대한민국은 그 나라들의 모델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유럽 3국 및 독일은 기본적으로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자원의 부재’를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경우 복해 유전을 통해 쌓은 국부를 복지에 활용한다”며 “지하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이 노르웨이의 모델을 있는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이들 복지 국가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성공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세금 부담률이 소득의 40~50%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에 따르는 것은 국가 재정 운영도가 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다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숙 회장이 지난해 6월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감시활동 교육'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인은 거지가 아냐…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이 회장은 복지를 단순히 선거 승리의 일환으로 여기는 풍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는 후보들이 ‘어느 나라 모델을 가져오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대선 후보로 나선 미래의 국가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선진복지국가’가 뭔지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정 복지를 생각한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재

교육을 시켜 성취감, 자아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가 맞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복지는 한자로 福祉고 영어로는 welfare로 복을 유지한다는 뜻인데, 이는 한 번 시행하면 계속 해야 한다는 뜻도 은연중에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인간 본연의 심리인지는 몰라도 복지가 늘어나도 ‘행복하지 않다’, ‘왜 더 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결국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문제는 남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기업은 기업 본연의 활동인 이윤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며 “사회를 기반으로 이 같은 활동에 매진한 기업들이 환원을 하는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단순히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는 통일이 된 이후에도 문제”라며 “통일이 되면 기본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도 자존심만큼은 엄청나게 강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최선의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국회 이민봉 기자 / 정리: 국회 박정배 기자

〈공지사항〉

1.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1박 2일 공감여행』

- 일 시: 2017.7. 08(토)~09(일)
- 장 소: 해남, 진도, 새만금 방조제, 고산 윤선도 유적지, 세종 정부종합청사
- 참석대상: 청소년, 중장년 여성 각 20명 1:1 멘토링
- 후 원: 행정자치부

2. 『중장년층 Again 한마당! - 힐링등산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 일 시: 2017.9. 23(토) 오전 9시~오후 5시
- 장 소: 양평 용문산 및 야외공연장
- 참석대상: 중장년 남녀 희망자
- 후 원: 행정자치부

3 『중장년층의 여가 활용과 자원봉사 정책 과제』

- 일 시: 2017. 10월 중순
- 장 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 참석대상: 성인남녀 누구나
- 후 원: 행정자치부

4. 제 8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 일 시: 2017. 10.28~29
- 장 소: 서울 시청광장
- 참석대상: 모든 국민

5. 대중매체 TV 속 남녀차별 개선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 일 시: 5월~11월
- 모니터 위원 선정
- 지상파 4, 종합채널 4, 전문방송 3 총 11개 방송 프로그램(드라마, 예능/음악, 시사)을 방송모니터링
-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아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정에서 남성의 가사 및 양육/보육 분담에 대한 인식개선, 직장/사회에서의 남녀차별을 개선을 위한 방송의 역할 모니터링
- 후 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 연구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Sunjin Welfare Social Association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 혁: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자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참가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자
- 2016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 2016 통일부『통일박람회』참가단체
- 2016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 2016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참가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2017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 2017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

협 력 기 관: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차 흥 봉)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총재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회장 성규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은미)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9988234』

수료증 및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제2015-001578호)